목 차

학사일정표 ····· 2
교육대학원 약사 및 연혁 ····· 4
교육대학원 편제 및 전공 현황 ····· 10
강의시간표(서울) ····· 12
강의시간표(국제) ····· 16
경희 교원양성 교육기준 ····· 19
교육대학원 학생 윤리 헌장 ····· 23
석사학위 취득 ····· 24
- 석사학위 취득기준 ····· 24
- 종합시험, 졸업논문, 논문대체 ····· 25,26,28
교원자격증 취득 ····· 30
- 교원자격증 취득기준 ····· 31
- 교원자격증(2급)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32
- 전문상담교사(1급), 한국어교사, 평생교육사 합격기준 ····· 33,34
-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35
- 전공과목의 이수, 교직과목의 이수 ····· 38,39
- 교육봉사활동, 학교현장실습 ····· 40,42
- 교직적성및인성검사,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 ····· 44,45
- 성인지 교육,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 47,48
학사안내 ····· 49
- 학칙 열람/수학연한/등록 ····· 49
- 휴학/복학 ····· 51
- 수강신청 ····· 52
- 장학제도 ····· 59
Info21 포털 ····· 61
학생상담 ····· 62
생활안내 ····· 63
- 학생지원센터(학생증발급 및 재증명) ····· 63
- 예비군연대본부/건강센터 ····· 64
- 중앙도서관 ····· 65
- 교원임용고사반, 공용소프트웨어 사용 안내 ····· 66
- 건물 출입방법, 주차 안내, 원우회 소개 ····· 69
교육대학원 내규 ····· 71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 85,104

학사일정표

월	일정	학사내용
2023년 8월	8. 7(월) ~ 16(수)	휴·복학 신청 교직/보건/경희가족장학 수혜 변경자 신청 논문대체승인신청서 제출(논문→논문대체 변경자, 복학생, 수료생 포함)
	8. 15(화)	광복절
	8. 16(수)	202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8. 17(목)	2023학년도 후기 석사과정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국제C)
	8. 17(목) ~ 22(화)	202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4기이상, 2~3기, 신입생, 전체기수 순)
	8. 18(금)	2023학년도 후기 석사과정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서울C)
	8. 21(월) ~ 25(금)	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
9월	9. 1(금)	개강(학기 개시일)
	9. 1(금) ~ 7(목)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교직/보건/경희가족장학 증빙서류 원본 제출
	9. 4(월) ~ 7(목)	종합시험 응시 과목 신청(Info21 신청) 학업장려장학 신청
	9. 12(화) ~ 15(금)	추가등록
	9. 14(목)	2023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9. 28(목) ~ 30(토)	추석연휴
	9. 27(수)	우수장학 및 학업장려장학 선발 발표
10월	10. 3(화)	개천절
	10. 9(월)	한글날
	10. 10(화) ~ 13(금)	2기 논문예비계획서 또는 논문대체신청서 제출
	10. 14(토)	2023학년도 2학기 종합시험(국제)
	10. 16(월) ~ 23(월)	2024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0. 20(금) ~ 26(목)	2학기 중간시험
	10. 23(월) ~ 26(목)	5기 심사용 논문 접수
	10. 27(금) ~ 11. 2(목)	중간 강의평가
	10. 28(토)	2023학년도 2학기 종합시험(서울)
	10. 27(금)	2기 논문지도교수 배정결과 발표

※ 학사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학사일정을 통해 안내합니다.

월	일정	학사내용
11월	10. 31(화)	종합시험 결과 발표(국제)
	11. 20(월)	종합시험 결과 발표(서울)
	11. 20(월) ~ 23(목)	3기 논문지도결과보고서 제출 4기 공개발표보고서 제출
	11. 27(월) ~ 12. 1(금)	5기 논문심사
12월	12. 1(금) ~ 21(목)	기말 강의평가 시행
	12. 5(화) ~ 11(월)	교육봉사활동 실습일지 제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접수
	12. 7(목)	교육봉사활동 평가회
	12. 15(금) ~ 21(목)	학기말시험 및 종강
	12. 15(금) ~ 27(수)	성적입력
	12. 15(금) ~ 29(금)	사전 성적열람(강의평가 완료자 열람 가능/ 단, 12.26-12.28 제외)
	12. 30(토) ~ 2024. 1. 3(수)	성적열람 및 공시(정정) 5기 학위논문 제출(학위논문 완성본 중앙도서관 제출)
2024년 1월	1. 17(수) ~ 19(금)	재입학 신청(제적 이후 재입학 희망자)
2월	2. 5(월) ~ 16(금)	휴·복학 신청 교직/보건/경희가족장학 수혜 변경자 신청 논문대체승인신청서 제출(논문→논문대체 변경자, 복학생, 수료생 포함 등)
	2. 14(수)	2024학년도 전기 석사과정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국제C)
	2. 21(수)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24학년도 전기 석사과정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서울C)
	2. 19(월) ~ 23(금)	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
	2. 20(화) ~ 23(금)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4기이상, 2~3기, 신입생, 전체기수 순)

※ 학사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학사일정을 통해 안내합니다.

교육대학원 약사 및 연혁

교육대학원 약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은 1966년 3월 14일 설립한 산업경영대학원을 그 모태로 한다. 조국근대화를 국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세웠던 당시 경제개발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산업경영대학원은 경영학과.산업경제학과.지역개발학과의 3개 학과로 출범하였고, 초대 원장으로 許增秀교수가 취임하였다.

산업경영대학원은 1971년 3월 1일, 경영행정대학원으로 개명하였고, 경영학과.산업경제학과.지역개발학과.교육행정학과의 4개과를 두었다. 이 경영행정대학원의 교육행정학과(석사과정 79명, 연구과정 4명)를 모태로 하여 이듬해인 1972년 3월 1일, 13개 전공에 총 정원 200명의 교육대학원 설립을 인가받아 오늘에 내려오고 있다.

교육대학원 연혁

1966. 3. 14	산업경영대학원 설립(경영학과.산업경제학과.지역개발학과) 초대원장 許增秀교수 취임
1967. 9. 1	제2대 원장 趙孝源교수 취임
1971. 3. 1	산업경영대학원을 경영행정대학원으로 改名 (경영학과.산업경제학과.지역개발학과.교육행정학과) 제3대 원장 朴魯植교수 취임
1972. 1. 18	교육대학원에 경영행정대학원의 교육행정학과(석사과정 79명, 연구과정 4명)를 흡수 병합하여 13개 전공에 총 정원 200명으로 교육대학원 설립인가를 받음. (초등교육전공.중등교육전공.사회교육전공.일반사회교육전공.역사교육전공.지리교육전공.국어교육전공.영어교육전공.수학교육전공.산업교육전공.음악교육전공.미술교육전공.체육교육전공)
3. 1	초대 원장 金明福교수 취임
3. 20	교육대학원 개원식
3. 21	교육대학원 개강식
4. 11	교육대학원 원우회 창립총회
4. 26	교육대학원위원회 설립
1975. 3. 1	제2대 원장 金善再교수 취임
1976. 1. 22	대학 1040-110호로 40명 증원되고, 초등교육전공.중등교육전공을 폐지한 대신 교육행정전공을 인가 받아 12개 전공에 총 정원 240 명으로 됨.

1978. 12. 30	대학 1040-027호로 80명 증원되고 과학교육전공.공업교육전공을 신설 인가 받아 14개 전공에 총 정원 320명으로 됨.
1979. 11. 19	제3대 원장 趙炳華교수 취임
12. 5	대학 1041.3-1621호로 학생정원이 30명 증원되어 총 정원 350명으로 됨.
1980. 5. 9	제4대 원장 金善鎬교수 취임
11. 24	대학 1041.3-1621호로 50명 증원되고 국민윤리교육전공을 신설 인가 받아 15개 전공에 총 정원 400명으로 됨.
1981. 11. 25	대학 1041-1713호로 30명 증원 받아 총 정원이 430명으로 되고, 산업교육전공을 농업교육전공으로 명칭 변경함.
1982. 11. 22	대학 1041-1148호로 요업공예교육전공을 신설 인가 받아 16개 전공으로 됨.
1983. 10. 29	대학 1041-2389호로 과학교육전공을 물리교육전공.화학교육전공.생물교육전공으로 분리하고, 전자계산교육전공을 신설 인가 받아 19개 전공으로 됨.
1984. 1. 5	제5대 원장 梁炳澤교수 취임
5. 28	교육대학원 재학생 해외 연수 및 교육계 시찰 시행
1985. 2. 1	제6대 원장 朴基盤교수 취임
1988. 2. 1	제7대 원장 朴貞熏교수 취임
1989.	사회교육 폐과
1990. 2. 1	제8대 원장 元炳旿교수 취임
1991. 11. 18	양성 25710-534호로 15명 증원되고 상업교육전공을 신설(1992-2학기) 인가 받아 20개 전공에 총 정원 445명으로 됨.
1992. 9. 1	양성 25710-426호로 30명 증원되어 총 정원 475명으로 됨.
1993. 9. 6	양성 81413-540호로 20명 증원되고 요업공예교육전공을 도예교육전공으로 명칭 변경하고, 환경교육전공이 신설되어 21개 전공에 총 정원 495명으로 됨.
1993. 12. 29	제9대 원장 朴起緖교수 취임
1994. 9. 1	전문 교육자 과정 신설
1994. 10. 21	교양 81413-502호로 20명 증원되고 중국어교육전공.일어교육전공을 신설 인가 받아 23개 전공에 총 정원 515명으로 됨.
1995. 10. 23	교양 81413-499호로 20명 증원되고 가정교육전공.불어교육전공.지구과학교육전공.디자인교육전공을 신설 인가 받아 27개 전공에 총 정원 535명으로 됨.

1996. 10. 30	교양 81423-625호로 1997학년도부터 총 정원제에서 입학정원제로 변경되면서 연 입학정원이 244명이 되고, 교육공학전공.유아교육전공.간호교육전공을 신설 인가 받아 30개 전공으로 됨.
1996. 12. 24	제10대 원장 高敬植교수 취임
1997. 11. 1	교양 81423-649호로 1998학년도 입학정원 40명이 증원되고 교육심리전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태권도교육전공을 신설 인가 받아 33개 전공에 연 입학정원이 284명으로 됨.
1999. 11. 19	교양 81413-237호로 2000학년도 입학정원 70명이 증원되고 한문교육, 상담심리, 초등영어교육을 신설 인가 받아 36개 전공에 연 입학정원이 354명으로 됨.
2000. 1. 1	제11대 원장 朴起緖교수 취임
2000. 2. 29	교양 81413-170호로 공업교육전공을 전자교육전공.기계교육전공으로 분리 명칭 변경하여 37개 전공으로 됨.
2000. 10. 25	교양 81400-802호로 2001학년도 입학정원 30명 증원하여 384명으로 되고, 박물관.미술관 교육, 지식정보화설계교육전공, 무용교육, 스페인어교육 신설인가 받아 41개 전공으로 됨.
2001. 4. 17	교원 제200-27호에 의거 수원캠퍼스 분원 설치 입학정원 : 50명 수업형태 : 야간제 설치전공 : 10개 전공(일어교육전공, 국어교육전공, 불어교육전공, 스페인어교육전공, 환경교육전공, 기계교육전공, 전자교육전공, 전자계산교육전공, 도예교육전공, 디자인교육전공) 설 치 일 : 2001. 9. 1
2001. 7. 5	제12대 원장 安正秀교수 취임
2001. 8. 31	학교.사회.가정 3영역 교육담당자 교육시스템 개발
2001. 9. 8	교양 81840-540호로 태권도교육전공을 체육교육전공에 통합, 상업교육전공은 상업정보교육전공, 전자계산전공은 정보컴퓨터교육전공으로 명칭변경, 국민윤리교육전공, 불어교육전공, 지학교육전 공, 농업교육전공은 폐과하고, 교육경영 및 평가전공을 신설하여 37개 전공으로 됨.
2002. 3. 2	자녀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신설
2002. 5. 6	교육대학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2002. 11. 12	교양 81840-845호로 기계교육, 전자교육은 폐과하고 한국학교육과 기술교육이 신설하여 37개 전공이 됨.
2003. 1. 2	제13대 원장 李京姬교수 취임

2003. 3. 3	체육교육전공 수원으로 이전하였음.
2003. 10. 8	교원 81840-713호로 한문교육, 스페인어교육전공 폐과하여 25개 전공이 됨.
2004. 10. 25	교원양성연수과-6047호로 영양교육을 신설하여 36개 전공이 됨. 교원양성연수과-6047호로 영양교육비학위과정(30명)이 같이 신설됨.
2005. 7. 18	[수원] 2005학년도 하계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실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2005.07.18(월) ~ 8.23(화) 224명 수료
2006. 1. 6	[수원] 2006학년도 동계 중등 1,2급 정교사 자격연수 실시 (공통과학, 환경, 화공섬유, 기계금속, 요업) 2006.01.16(금) ~ 2.15(수) 95명 수료
2006. 2. 28	[수원]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설 중등교원연수원 인가 (교원양성연수과-1523 "경희대 교육대학원 부설 중등교육연수원 인가 통보")
2006. 7. 14	[수원] 2006학년도 하계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실시 (체육,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2006. 07.14(금) ~ 8.24(목) 740명 수료
2006. 7. 24	2006학년도 하계 신규교사 직무연수 실시 2006.07.24(월) ~ 8.04(금) 618명 수료
2006. 10. 4	교원양성연수과-6988호로 지식정보화설계교육전공, 무용교육전공, 교육경영 및 평가전공, 한국학전공, 기술전공이 폐과되고 학교경영전공을 신설하여 32개 전공이 됨.
2006. 11. 24	교원양성연수과-8057호로 영양교사양성과정(비학위과정) 폐지
2006. 12. 27	[수원] 2006학년도 동계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실시 2006.12.27(수) ~ 2007.02.08(목) 373명 수료
2007. 1. 8	제14대 원장 姜仁愛교수 취임
2007. 7. 18	[수원] 2007학년도 하계 1급 정교사 및 부전공 자격연수 실시 2007.07.18(수) ~ 2007.08.23(목) (1급 정교사 자격연수 :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환경, 디자인 공예, 체육, 584명 수료, 부전공자격연수 : 기술 : 20명)
2007. 7. 20	[서울] 2007학년도 영어과 1정 자격연수과정 실시 2007.07.20(금) ~ 2007.08.24(금) 100명 수료
2007. 7. 23	[서울] 2007학년도 하계 신규교사 직무연수과정 실시 2007.07.23(월) ~ 2007.08.03(금) 588명 수료
2007. 10. 18	[수원]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비전 선포

	(수원캠퍼스에서 국제캠퍼스로 명칭변경)
2007. 12. 27	[국제] 2007학년도 동계 1급 정교사 및 부전공 자격연수 실시 (1급정교사 자격연수 : 공통과학 128명, 부전공자격연수 : 기술 24명) 2007.12.27(목) ~ 2008.02.01(금) 152명 수료
2008. 1. 14	[서울] 2007학년도 동계 초등 전문상담교사 연수과정 실시 2008.01.14(월) ~ 2008.01.18(금) 350명 수료
2008. 5. 20	교원 2008-132호로 초등영어교육전공 서울캠퍼스에서 국제캠퍼스로 이전
2008. 7. 18	[국제] 2008학년도 하계 1급 정교사 및 부전공 자격연수 실시 (1급정교사자격연수 :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일본어, 중국어 :231 명, 부전공자격연수 : 기술 42명) 2008. 07. 18(금) ~ 2008. 08. 25(월) 273명 수료
2008. 7. 21	[서울] 2008학년도 하계 신규교사 직무연수과정 실시 2008. 07. 21(월) ~ 2008. 08. 01(금) 630명 수료 [서울] 2008학년도 하계 영어과1정 자격연수과정 실시 2008. 07. 21(월) ~ 2008. 08. 25(월) 131명 수료
2008. 9. 3	발전기획과-3454호로 초등교육 전공폐지, 간호교육전공을 보건교육전공 명칭 변경, 환경교육전공 폐지, 디자인교육전공과 도예교육전공 "디자인.도예교육전공"으로 통합
2008. 12. 29	[국제] 2008학년도 동계 1급 정교사 및 부전공 자격연수 실시 (1급정교사 자격연수 : 공통과학 104명 수료, 부전공자격연수 : 기술 41명 수료) 2008. 12. 29(금) ~ 2009. 02. 06(금) 145명 수료
2009. 1. 12	[서울] 2008동계 초등담임교사 상담 직무연수과정 실시 2009. 01. 12(월) ~ 2009. 01. 16(금) 393명 수료
2009. 1. 16	제15대 원장 김준형 교수 취임
2009. 7. 20	[국제] 2009학년도 하계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실시 2009. 7. 20(월) ~ 2009. 8. 25(화) 298명 수료
2009. 7. 23	[서울] 2009학년도 하계 신규교사직무연수 과정 실시 2009. 7. 23(목) ~ 2009. 8. 5(수) 342명 수료
2010. 1. 18	[서울] 2009학년도 동계 초등담임교사 상담 직무연수과정 실시 2010. 1. 18(월) ~ 2010. 1. 23(토) 398명 수료 [서울] 2009학년도 동계 신규교사 직무연수과정 실시 2010. 1. 18(월) ~ 2010. 1. 29(금) 101명 수료

2010. 7. 19	[서울] 2010학년도 하계 신규교사 직무연수과정 실시 2010. 7. 19(월) ~ 2010. 7. 30(금) 308명 수료 [국제] 2010학년도 하계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실시 2010. 7. 19(월) ~ 2010. 8. 24(화) 208명 수료예정
2011. 7. 18	[서울] 2011학년도 하계 신규교사 직무연수과정 실시 2011. 7. 18(월) ~ 2011. 7. 29(금) 133명 수료 [국제] 2011학년도 하계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실시 2011. 7. 18(월) ~ 2011. 8. 24(수)
2012. 1. 2	[서울] 2011학년도 동계 신규교사직무연수과정 실시 2012. 1. 2(월) ~ 2012. 1. 13(금) 49명 수료
2013. 9. 24	제16대 원장 지은림 교수 취임
2014. 6. 10	The Gerstacker Fellowship Program 내한단 방문(Saginaw Valley State University)
2015. 3. 1.	교원복지연수과-2683호(2014.04.04.) 평생교육 신설
2016. 3. 1	교원복지연수과-8815호(2014.12.23.) 학교경영 → 교사리더십, 교육공학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으로 명칭 변경, 정보·컴퓨터교육전공 폐지(2016.2.28.) 교원연수복지과-2630호(2015.05.06.) 실용음악교육 신설
2016. 2. 17	제17대 원장 성열관 교수 취임
2017. 3. 1	교원복지연수과-1137호(2017.02.23.) 표시과목 변경에 따른 전공명칭 변경 [서울] 상업정보교육 → 상업교육 [국제] 디자인.도예교육 → 디자인교육 [서울] 가정교육전공, 지리교육전공 폐지
2018. 8. 17	제18대 원장 김병찬 교수 취임
2019. 3. 1	교원복지연수과-6448호(2017.09.05.) 전공 신설 및 명칭 변경 [국제] 혁신교육 신설 [서울] 교육행정 → 교육정책및리더십으로 명칭 변경
2021. 2. 28	교원양성연수과-2431호(2020.04.28.) 전공 폐지 [국제] 초등영어교육, 일어교육 폐지
2021. 4. 15	제19대 원장 양명희 교수 취임
2023. 7. 26	[서울] 2023학년도 하계 고교학점제 교사연수 과정 실시 2023. 7. 26(수) ~ 7. 28(수) 26명 수료

교육대학원 편제 및 행정실

총 장

부 총 장

원 장 : 양명희

행 정 실(서울)

Tel. 02) 961-0135~6
Fax. 02) 961-9593
E-mail. khsb2300@khu.ac.kr

- 부 원 장 : 심영옥
- 행정실장 : 김용화
- 행정계장 : 이임정, 박미라, 문수영
- 직 원 : 강원우, 박상정, 이용준, 황인술

행 정 실(국제)

Tel. 031) 201-2021~2
Fax. 031) 201-2023
E-mail. khwb6100@khu.ac.kr

- 부 원 장 : 최일선
- 행정실장 : 최필호
- 행정차장 : 정민숙
- 직 원 : 안유정, 여경아

관련 연구소

교육발전연구원

- 소 장 : 양명희
- 연구위원 : 김병찬, 김유진, 성열관, 심영옥, 우정길, 유영학, 이은배, 조영하, 지은림, 최일선, 한지수 (가나다순)
- 사무국장 : 김유진
- 연 락 처 : 02) 961-0210
- 위 치 : 청운관 703호

전공 현황

서울캠퍼스

※ 연구실 전화번호 : 02) 961-내선

번호	전공	주임교수	소속	연구실	이메일
1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우정길	교육대학원	9461	woosia@khu.ac.kr
2	교육심리	양명희	교육대학원	0424	clara@khu.ac.kr
3	교육정책 및 리더십	조영하	교육대학원	9127	youcho@khu.ac.kr
4	국어교육	서덕순	문과대학	0223	fogj99@khu.ac.kr
5	물리교육	안정선	이과대학	0980	johnsonahn@khu.ac.kr
6	미술교육	심영옥	교육대학원	9644	ok2art@khu.ac.kr
7	박물관·미술관교육	심영옥	교육대학원	9644	ok2art@khu.ac.kr
8	보건교육	박선희	간호과학대학	0874	spark@khu.ac.kr
9	상담심리	양명희	교육대학원	0424	clara@khu.ac.kr
10	상업교육	강인원	정경대학	9182	iwkang@khu.ac.kr
11	생물교육	김권일	이과대학	9612	kwoneelkim@khu.ac.kr
12	수학교육	박종도	이과대학	0875	mathjdpark@khu.ac.kr
13	역사교육	구만옥	문과대학	0989	pero@khu.ac.kr
14	영양교육	윤기선	생활과학대학	0264	ksyoon@khu.ac.kr
15	영어교육	신자란	문과대학	0987	jaranshin@khu.ac.kr
1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이정희	국제교육원	9161	iiekor@khu.ac.kr
17	유아교육	안선희	생활과학대학	9239	shahn@khu.ac.kr
18	음악교육	김유진	교육대학원	0876	yjinkim@khu.ac.kr
19	일반사회교육	최현진	정경대학	9465	choihj@khu.ac.kr
20	화학교육	김영미	이과대학	9537	youngmi.kim@khu.ac.kr

※ * : 위임 전공주임교수

국제캠퍼스

※ 연구실 전화번호 : 031) 201-내선

번호	전공	주임교수	소속	연구실	이메일
1	평생교육	최일선	교육대학원	3330	education@khu.ac.kr
2	교사리더십	김병찬	교육대학원	2020	bckim@khu.ac.kr
3	혁신교육	성열관	교육대학원	(서울)9173	yksung@khu.ac.kr
4	실용음악교육	한경훈	예술디자인대학	3790	han@khu.ac.kr
5	영어교육	성기완	외국어대학	2274	kiwansung@khu.ac.kr
6	수학교육	김정산	응용과학대학	3869	freddie1@khu.ac.kr
7	중국어교육	박찬욱	외국어대학	2272	cwp45@khu.ac.kr
8	디자인교육	김선철	예술디자인대학	2039	sunchulkim@khu.ac.kr
9	체육교육	이정민	체육대학원	2736	jungminlee@khu.ac.kr
10	유아교육	한지수	교육대학원	2036	jisuhan@khu.ac.kr

※ 교직주임 : [서울] 우정길(woosia@khu.ac.kr) / [국제] 최일선(education@khu.ac.kr)

서울캠퍼스

1. 전공과목

※ [이수구분(코드) : 전공필수(04, 기본이수과목), 전공선택(05), 교직전선(20, 교과교육영역과목)]

요일	시간	1~2교시 (18:30~19:50)					3~4교시 (20:00~21:20)				
	전공	이수구분	강좌코드	과목명	교수명	강의실	이수구분	강좌코드	과목명	교수명	강의실
월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05	EDMT7010700	빅데이터와 학습분석	최원재	청710	05	EDMT7010100	디지털학습 경험디자인	강민석	청710
	교육심리	05	EDEP700700	학습컨설팅	양명희	청402	05	EDEP702700	교육심리연구방법론	권재기	청402
	교육정책 및 리더십	05	EDPL701300	교육조직과 리더십	조영하	청619	05	EDPL700700	교육정책 및 리더십연구방법	조성희	청619
	국어교육	05	EDKO790900	포스트휴먼과 디지털리터러시	호창수	청202	04	EDKO720100	국어학개론	정혜진	청202
	물리교육	04	EDPH780600	전자기학	안정선	청708	05	EDPH700300	핵및입자물리학개론	김낙우	청708
	미술교육	04	EDFA780300	조소	서민규	청506	04	EDFA780800	표현기법	배지현	청506
		04	EDFA780100	미술교육론	심영옥	청620	05	EDFA701900	미술교육연구방법론	심영옥	청620
		05	EDFA702000	미술실기교육방법론	김지은	청704	05	EDFA701000	작품분석연구	인가희	청704
		05	EDFA791000	AI창의융합미술교육	강효경	청705	04	EDFA781200	디자인	노송희	청705
		04	EDFA780900	서양화	문주호	청714	04	EDFA780400	한국미술사	박주열	청706
	박물관 ·미술관 교육	05	EDMG700100	박물관,미술관학	홍혜주	청712	05	EDMG701600	박물관교육과 평가	심효진	청712
	보건교육	05	EDHE700400	보건학	주정민	청204	05	EDHE700300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임경미	청204
	상담심리	04	EDCP710300	진로상담	윤소민	청403	04	EDCP720200	행동수정	윤소민	청403
	상업교육	05	EDCE780500	창업일반	김경희	청713	04	EDCE780300	무역학개론	김현철	청713
	생물교육	04	EDBI780700	동물생리학	김상훈	스1028	04	EDBI780800	생태학	박영석	스1028
	수학교육	04	EDMA780400	해석학	한종민	스B104	04	EDMA780200	선형대수	연미정	스B104
	역사교육	04	EDHI710100	역사교육론	민유기	청709	04	EDHI770100	한국근현대사	이하나	청709
	영양교육	05	EDNU760500	식품미생물학특론	김연호	청201	05	EDNU760501	식품미생물학특론	김연호	청201
		04	EDNU730100	단체급식및실습	어금희	청203	04	EDNU740100	영양판정 및 실습	심민주	청203
		04	EDNU710100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	안효진	청303					
	영어교육	04	EDEN780500	영어학개론	이수영	청304	04	EDEN780200	영문학개론	최지안	청30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04	EDKL720100	외국어습득론	이정희	청502	04	EDKL730400	한국어문법교육론	조현용	청502
		04	EDKL730700	한국어평가론	최문석	청503	04	EDKL740200	한국의 현대문화	백태현	청503
	유아교육	04	EDEC780700	영유아 발달과 교육	김유정	청301	04	EDEC700300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한애향	청301
		04	EDEC781600	유아안전교육	이상은	청305	04	EDEC781200	유아놀이지도	남효정	청305
		04	EDEC780400	유아교육론	김은혜	청308	04	EDEC780100	유아과학교육	서예석	청308
		05	EDEC791100	유아교육논문작성법	한지수	청309	05	EDEC790800	유아창의융합교육	김상겸	청309
	음악교육	04	EDMU780800	음악교육론	이지예	청307	04	EDMU780500	피아노반주법	박미숙	청307
		04	EDMU780300	음악분석 및 형식론	김유미	청407	04	EDMU780600	합창.합주지도법	박송이	청407
		05	EDMU791100	AI.창의융합음악 수업개발	박다해	청507	04	EDMU780100	국악가창지도법	박희원	청507
		04	EDMU782500	서양음악사	황순도	청509	04	EDMU781200	국악사	김지연	청509
		04	EDMU780900	국악개론	김유진	청409	05	EDMU700300	음악교육연구방법론	김유진	청409
		04	EDMU781500	국악실기	안지영	청715	04	EDMU780400	장구반주법	안지영	청715
	일반사회교육	04	EDSO780200	인간과 행정	김광구	청707	04	EDSO780300	일반사회교육론	허주영	청707
	화학교육	04	EDCH780600	무기화학	방승훈	스B112	05	EDCH781700	화학교육특론	강대훈	스B112
목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04	EDKL750100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이정희	청203

- 교과교육영역 과목

요일	전공 \ 시간	1~3교시 (18:30~20:30)					비고
		이수구분	강좌코드	과목명	교수명	강의실	
수	국어교육	20	EDKO790500	국어교과교수법	박유현	청608	
	미술교육	20	EDFA790700	미술교과교수법	심영옥	청620	
		20	EDFA790701	미술교과교수법	안상은	청309	
	상업교육	20	EDCE780900	상업교육론	고재윤	청505	
	영어교육	20	EDMA790400	영어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신자란	청305	
	유아교육	20	EDEC790500	유아교과교수법	서예석	청207	
		20	EDEC790100	유아교과교육론	서현선	청705	
	음악교육	20	EDMU790400	음악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김유진	청409	
		20	EDMU790100	음악교과교육론	이보림	청307	

- 교과교육영역 과목 학부 개설 현황

순번	해당전공	개설 학부	학수코드	교과목명	학점	담당교수	강의시간/강의실
1	역사교육	(문과대학) 사학과	EDU3128S00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역사)	3	이소은	화 09:00-10:15(문309) 목 09:00-10:15(문309)
2	일반사회교육	(정경대학) 경제학과	EDU3349S00	교과교수법(일반사회)	3	정재학	금 18:00-20:45(정305)
3	일반사회교육	(정경대학) 경제학과	EDU3154S00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일반사회)	3	정재학	화 18:00-20:24(정302)
4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이과대학) 생물학과	EDU3356S00	교과교수법(과학)	3	유정칠	화 18:00-20:45(스B111)
5	생물교육	(이과대학) 생물학과	EDU3135S00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생물)	3	김수연	월 18:00-20:45(스110)
6	화학교육	(이과대학) 화학과	EDU3142S00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화학)	3	강대훈	수 18:30-21:15(스B108)
7	물리교육	(이과대학) 물리학과	EDU3132S00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물리)	3	안정선	수 17:00-19:45(스B112)
8	수학교육	(이과대학) 수학과	EDU3336S00	교과교수법(수학)	3	권창욱	금 09:00-11:45(수학과 연습실-2)
9	수학교육	(이과대학) 수학과	EDU3138S00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수학)	3	박현정	화 13:00-15:45(수학과 연습실-2)

* 개설 학부 사정에 따라 시간표가 변경될 수 있음 (수강신청 전 [종합시간표 조회] 에서 사전 확인)
* 학부에서 개설되는 교과교육영역 과목(3학점)은 이수구분 '선수(41)'로 수강해야 함.
  - 학부선수과목 수강신청 시 [학수번호-분반] 칸에 학수코드를 직접 입력 또는 별도 저장해 둔 학수코드 복사/붙여넣기 후 [조회]를 통해 수강신청
  - 교육대학원의 2.5년 강좌개설 계획을 확인한 후 학부 과목 수강신청(중복 수강하지 않도록 유의)
* 국어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상업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음악교육전공은 교육대학원 개설과목으로 수강함

2. 교직과목 및 공통과목

[이수구분(코드) : 교직(06), 기타(00), 논문지도(43), 종합시험(44)]

요일	시간	1~2교시 (18:30~19:50)					3~4교시 (20:00~21:20)				
	전공	이수구분	강좌코드	과목명	교수명	강의실	이수구분	강좌코드	과목명	교수명	강의실
목	교직이론	06	EDGE710200	교육철학 및 교육사	우정길	청301	06	EDGE710201	교육철학 및 교육사	우정길	청301
		06	EDGE710202	교육철학 및 교육사	이진영	청402					
		06	EDGE710300	교육과정	전아름	청715	06	EDGE710301	교육과정	전아름	청715
		06	EDGE710400	교육평가	권효진	청711	06	EDGE710401	교육평가	권효진	청711
		06	EDGE710500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김현미	청710	06	EDGE710501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김현미	청710
		06	EDGE710600	교육심리	이윤옥	청620	06	EDGE710601	교육심리	이윤옥	청620
		06	EDGE710700	교육사회	유영학	청205	06	EDGE710701	교육사회	유영학	청205
		06	EDGE710800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이영희	청308	06	EDGE710801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이영희	청308
		06	EDGE710900	생활지도 및 상담	임현수	청501	06	EDGE710901	생활지도 및 상담	임현수	청501
		06	EDGE710100	교육학개론	김준형	청502	06	EDGE710101	교육학개론	김준형	청502
		06	EDGE710102	교육학개론	전선숙	청305	06	EDGE710103	교육학개론	전선숙	청305
	교직소양	06	EDGE720100	특수교육학개론	주재연	청509	06	EDGE720101	특수교육학개론	주재연	청509
		06	EDGE720102	특수교육학개론	오주현	청203					
		06	EDGE720401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김재훈	청309	06	EDGE72040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김재훈	청309
		06	EDGE720400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박병용	청307					
		06	EDGE720200	교직실무	조항로	청303	06	EDGE720201	교직실무	조항로	청303
	교육실습	06	EDGE730300	교육봉사활동	박천기	서울	06	EDGE730301	교육봉사활동	박천기	서울
		06	EDGE730400	교육봉사활동(면제)	심영옥	서울	06	EDGE730200	학교현장실습(면제)	심영옥	서울
	기타교직 * (교직이론 인정 불가, 현직교원 대상과목)	06	EDGE772700	교사를 위한 인성교육론	한석훈	청404	06	EDGE700400	교직의 철학적 탐색	한석훈	청404
		06	EDGE772900	교육연구방법론	조성희	청709	06	EDGE772800	학위논문 작성법과 연구윤리	조성희	청709
		06	EDGE773000	디지털역량과 에듀테크	정준환	청713	06	EDGE701000	교실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개발	이선혜	청713
		06	EDGE772300	AI,인간 그리고 교육	정화영	청204					
		06	EDGE770900	교육리더십	조영하	청304					
기타 교직필수		00	EDGE740500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1	석소현	청620	00	EDGE772000	성인지교육1	심영옥	서울
		00	EDGE740600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2	석소현	청620	00	EDGE771900	성인지교육2	심영옥	서울
		00	EDGE740200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1	심영옥	서울					
		00	EDGE740300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2	심영옥	서울					
종합시험/ 졸업논문		44	EDGE770100	종합시험(전공)	양명희	서울		종합시험 자격을 갖춘 학생 (4기 이상, 교직 6학점 이상 이수 전공 12학점 이상 이수, 전체평균평점 80점 이상)			
		44	EDGE770200	종합시험(교직)	양명희	서울					
		43	EDGE760400	논문지도	-	서울		논문지도 이수 자격을 갖춘 학생 (5기 이상, 공개발표 통과자)			

※ 강의실 안내 : 청 – 청운관, 스 – 스페이스21관, 문 - 문과대학관

※ ▭ : 교직이수자의 필수교과목임

※'기타 교직'은 교원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교직이론 과목이 아님

※ 본 전공별 강좌개설은 전공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수강신청 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3. 2023~2024학년 전공별 강좌개설 계획

전공	2023학년도 2학기		2024학년도 1학기		2024학년도 2학기	
	1~2교시	3~4교시	1~2교시	3~4교시	1~2교시	3~4교시
	과 목 명	과 목 명	과 목 명	과 목 명	과 목 명	과 목 명
교육방법및교육공학	빅데이터와 학습분석	디지털학습 경험디자인	오픈러닝과 포용적 교육	이러닝설계 개발실행	4차산업혁명시대의 교육과평가	디자인씽킹과 창의융합교육
교육심리	학습컨설팅	교육심리연구방법론	인간발달	회귀분석과변량분석	교육심리세미나	연구설계
교육정책및리더십	교육조직과리더십	교육정책 및 리더십연구방법	교육과 지역공동체	교육프로그램평가	법·윤리적 쟁점과 교육리더십	교육정책 및 리더십 세미나
국어교육	포스트휴먼과 디지털리터러시	국어학개론	이해교육론	국문학개론	소설교육론	국어교육론
	[수/3학점] 국어교과교수법		[수/3학점] 국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수/3학점] 국어교과교육론	
물리교육	전자기학	핵및입자물리학개론	양자역학	파동및광학	물리교육실험	전산물리
미술교육	미술교육론	작품분석연구	미술교육과정연구	미술재료와매체연구	미학교육론	박물관미술관미술교육
	AI.창의융합미술교육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	현대미술과미술비평교육	다문화미술교육특론	색채학
	조소	디자인	한국화	공예	판화	조소
	서양화	표현기법	영상	회화	조형실기	동양화
	미술실기교육방법론	미술교육연구방법론	미술실기교육방법론	미술교육연구방법론	미술실기교육방법론	미술교육연구방법론
	[수/3학점] 미술교과교수법		[수/3학점] 미술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수/3학점] 미술교과교육론	
박물관·미술관교육	박물관. 미술관학	박물관교육과 평가	박물관교육연구방법론	박물관교육세미나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	박물관미술관교육 교재 및 교구개발
보건교육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조사방법론(연구)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학	보건사업관리
상담심리	진로상담	행동수정	집단상담	특수아상담	성격심리	상담이론과실제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	
상업교육	창업일반	무역학개론	연구조사방법론	상업교재연구및지도법	회계정보처리론	재무관리
	[수/3학점] 상업교과교육론		-		[수/3학점] 상업교과교수법	
생물교육	동물생리학	생태학	발생학	바이러스학	유전학	분류학
수학교육	해석학	선형대수	현대대수학	기하학일반	백터해석	위상수학
	-		[수/3학점]수학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역사교육	역사교육론	한국근현대사	동서교류사	한국근세사	서양고대사	동아시아현대사
영양교육	식품미생물학특론(00)	식품미생물학특론(01)	생애주기영양학	지역사회영양학특론	식품학	식생활과문화
	단체급식및실습	영양판정및실습	식품위생학	조리원리및실습	식사요법및실습	영양학
	영양교육및상담실습	-	-		-	
영어교육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영어말하기지도법	디지털시대의 영어교육론	영어음성음운론	영미문화
	[수/3학점]영어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수/3학점]영어교과교수법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외국어습득론(1,2기)	한국어문법교육론(1,2기)	한국어발음교육론(1,2기)	국어학개론(1,2기)	외국어습득론(1,2기)	한국어문법교육론(1,2기)
	한국어평가론(3,4기)	한국의현대문화(3,4기)	한국어교재론(3,4기)	한국어어휘교육론(3,4기)	한국어평가론(3,4기)	한국의현대문화(3,4기)
	-	[목]한국어교육 참관및실습(4기)	-	[목]한국어교육 참관및실습(4기)	-	[목]한국어교육 참관및실습(4기)
유아교육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유아교육과정	유아수학교육	영유아발달과 교육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유아교육론	유아놀이지도	아동권리와복지	유아미술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교육논문작성법	유아창의융합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관찰및실습	유아교육논문작성법	부모교육
	유아안전교육	유아과학교육	특수유아의이해	유아환경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상담이론및실제
	-		유아교육연구방법론	-	-	
	[수/3학점] 유아교과교육론/ 유아교과교수법		[수/3학점] 유아교과교수법/ 유아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수/3학점] 유아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유아교과교육론	
음악교육	서양음악사	국악사	서양음악사	국악교수법	서양음악사	국악사
	음악분석 및 형식론	합창.합주지도법	시창청음	화성법	음악분석 및 형식론	합창.합주지도법
	AI창의융합 음악수업개발	피아노반주법	다문화음악교육	에듀테크음악수업연구	AI.창의융합 음악수업개발	디지털음악교육
	음악교육론	장구반주법	피아노반주법	장구반주법	음악교육론	장구반주법
	국악실기	국악가창지도법	국악실기	국악가창지도법	국악실기	국악가창지도법
	국악개론	음악교육연구방법론	국악개론	음악교육연구방법론	국악개론	음악교육연구방법론
	[수/3학점] 음악교과교육론/ 음악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수/3학점] 음악교과교육론/ 음악교과교수법		[수/3학점] 음악교과교육론/ 음악교과논리및논술	
일반사회교육	인간과행정	일반사회교육론	현대사회의 이해	법과사회	시민교육과사회윤리	사회과학방법론
화학교육	무기화학	화학교육특론	물리화학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특론

※ 본 전공별 강좌개설 계획은 전공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제캠퍼스

1. 전공과목

요일	시간 / 전공	1교시 (18:30~19:50)					2교시 (20:00~21:20)				
		이수구분	강좌코드	과목명	교수명	강의실	이수구분	강좌코드	과목명	교수명	강의실
목	교사리더십	05	EDTL74200	미래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기반 교육의 이해와 적용	김영득	멀408	05	EDTL70100	교사리더십의 이론적기초	김병찬	멀408
	평생교육	05	EDLE801000	인적자원개발론	최일선	멀301	04	EDLE700300	평생교육방법론 (20:00~22:00)	김지현	멀301
			EDLE700900	평생교육실습(화)	최일선	멀513					
	영어교육	05	EDEN700600	영어교육 연구방법론	안치현	멀612	20	EDEN790401	영어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안치현	멀612
		05	EDEN790800	중등영어 평가방법론	성기완	멀409	04	EDEN780300	영어음성음운론	박경선	멀603
		04	EDEN780800	영미문화	박경선	멀603					
	유아교육	20	EDEC790101	유아교과교육론	한지수	멀512	04	EDEC780401	유아교육론	김상겸	멀512
		04	EDEC781100	유아교사론	박영숙	멀602	20	EDEC790400	유아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박영숙	멀602
		05	EDEC790801	유아창의융합교육	김상겸	멀608	04	EDEC781601	유아안전교육	심혜숙	멀608
		04	EDEC780101	유아과학교육	이승숙	멀609	04	EDEC781300	유아사회교육	이승숙	멀609
	수학교육	04	EDMA780900	복소해석학	김정호	멀402	20	EDMA790100	수학교과교육론	변규미	멀402
	디자인교육	20	EDDC791700	디자인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이지윤	멀607	04	EDDC791800	색채학	김성화	멀607
	중국어교육	20	EDCN790100	중국어 교과교육론	배규리	멀610	04	EDCN780700	중국어학개론	박찬욱	멀610
		04	EDCN790400	중국문학개론	김경석	멀611					
	체육교육	04	EDPE790400	체육측정평가	이정민	멀302	04	EDPE780800	특수체육	최윤진	멀302
		04	EDPE780600	운동역학	왕준식	멀304	04	EDPE780700	체육사,철학	김미숙	멀304
		04	EDPE780200	스포츠사회학	한광령	멀311	20	EDPE790300	체육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문희수	멀311
		20	EDPE790700	체육교과교수법	곽은창	멀312	05	EDPE791000	체육교육과 AI 활용	조선미	멀312

※ 이수구분 : [04]전공필수(기본이수과목), [05]선택과목, [20]교직전선(교과교육영역과목)

※ 평생교육전공의 전공필수과목(04)은, 평생교육사자격증(2급)의 취득기준을 근거로 필수과목에 한하여 이수구분 코드(04)를 부여함(P.35 마. 평생교육사(2급) 이수요건 참조)

2. 교직과목 및 공통과목

요일	시간 / 전공	1교시 (18:30~19:50)					2교시 (20:00~21:20)				
		이수구분	강좌코드	과목명	교수명	강의실	이수구분	강좌코드	과목명	교수명	강의실
월	교직이론	06	EDGE710104	교육학개론	남기석	멀302	06	EDGE710105	교육학개론	박미연	멀302
		06	EDGE710203	교육철학 및 교육사	이동윤	멀304	06	EDGE71080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임종헌	멀402
		06	EDGE71050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이용운	멀311	06	EDGE710402	교육평가	박은숙	멀311
		06	EDGE710602	교육심리	박미연	멀407	06	EDGE710701	교육사회	최일선	멀312
	교육소양	06	EDGE720103	특수교육학개론	강수정	멀409	06	EDGE720104	특수교육학개론	강수정	멀409
		06	EDGE720202	교직실무(유아)	연영아	멀408	06	EDGE720203	교직실무	고삼곤	멀408
		06	EDGE72040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구민정	멀402	06	EDGE720404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이동윤	멀304
	기타교직* (현직교사 교직과목)	06	EDGE773200	학교폭력사안 이해와 대응	강휘석	멀410					
수	교육실습	06	EDGE730302	교육봉사활동	최일선	-	06	EDGE730401	교육봉사활동 (면제)	최일선	-
기타 교직필수		00	EDGE74020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1	최일선	-	00	EDGE74050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1	최일선	-
		00	EDGE74030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2	최일선	-	00	EDGE74060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2	최일선	-
							00	EDGE772001	성인지교육1	최일선	-
							00	EDGE771901	성인지교육2	최일선	-
종합시험 / 졸업논문		44	EDGE770100	종합시험(전공)	**※ 종합시험 자격을 갖춘 학생 (4기 이상, 교직 6학점 이상 이수, 전공 12학점 이상 이수, 전체 평균평점 80점 이상)**						
		44	EDGE770200	종합시험(교직)							
		43	EDGE760400	논문지도	**※ 논문지도 이수 자격을 갖춘 자(5기 이상, 공개발표 통과자)**						

※ 이수구분 : [00]기타, [06]교직, [43]논문지도, [44]종합시험

※ 강의실 안내 : 멀 – 멀티미디어교육관

※ ▒▒▒▒ : 교직이수자의 필수교과목임

※ '기타 교직' 은 교원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교직이론 과목이 아님

※ 본 전공별 강좌개설은 전공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수강신청 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3. 2023~2024학년도 전공별 강좌개설 계획

전공	2023학년도 2학기		2024학년도 1학기		2024학년도 2학기	
	1교시	2교시	1교시	2교시	1교시	2교시
	과 목 명	과 목 명	과 목 명	과 목 명	과 목 명	과 목 명
교사리더십	미래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기반 교육의 이해와 적용	교사리더십 이론적 기초	교사리더십 함양을위한 의사소통론	교사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사 및 학생 이해론	교사리저십 함양을위한 퍼실리테이션론	연구자로서 교사론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노인교육론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교육공학의활용	평생교육론
영어교육	영어교육 연구방법론	영어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영어교과교육론	영어학개론	영어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영어교과 논리 및 논술
	중등영어 평가방법론	영어음성음운론	멀티미디어 영어교육론	영어교과교수법	영어음성음운론	영미문화
	영미문화	-	제2외국어습득론	-	-	영어쓰기지도법
수학교육	복소해석학	수학교과교육론	위상수학	수학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미분기하학	수학교과교수법
디자인교육	디자인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색채학	스케치기법	디자인 교과교수법	공간디자인	디자인교육론
			공공디자인	컴퓨터그래픽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중국어교육	중국어교과 교육론	중국어학개론	중국어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한문강독	중국어 교과교수법	중국어강독
	중국문학개론	-	-	중국고전 산문연구	중국어작문	중국어교육론
	-	-	-	-	중국고전소설 연구	-
유아교육	유아교과교육론	유아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유아교육 연구방법론	유아교과교수법	유아교과교육론	유아교과교재 연구및지도법
	유아교사론	유아교육론	아동권리와복지	유아환경교육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
	유아창의융합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관찰 및 실습	유아교육의 최근동향과쟁점	유아수학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안전교육	특수유아의 이해	-	-	-
체육교육	체육측정평가	체육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체육교과교수법	체육교과교육론	체육교과교재 연구및지도법	체육교과교재 연구및지도법
	스포츠사회학	체육사철학	여가 레크리에이션	체육교육과 AI의 활용	체육측정평가	체육교과교수법
	운동역학	특수체육	건강교육	운동학습 및 심리	체육행정	체육사철학
	체육교과교수법	체육교육과 AI의 활용	운동생리학	체육측정평가	운동처방	특수체육

※ 본 전공별 강좌개설 계획은 전공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희 교원양성 교육기준이란?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을 취득한 모든 학생이 갖추어야 할 교사로서의 전문성 기준(경희교사전문성기준)과 이러한 교사를 길러내기 위해 우리 교육대학원이 제공해야 할 교육의 내용과 질을 규정한 교사교육기준(경희교사교육기준)을 말한다.

1. 경희 교사전문성 기준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학습과 발달
- 교육대학원에서 배운 교수이론을 자신의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
- 학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 교육대학원에서 배운 발달이론을 활용할 수 있다.

❑ 수업의 변화
- 자신이 배우지 않은 방식으로도 가르칠 수 있다.
- 수업에서 학생중심교육을 실현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고 있다.

❑ 교육격차
- 자신의 수업방식이 학생의 가정 배경에 따른 격차를 늘일 수도 또는 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 학습자의 발달단계와 학습 속도에 맞게 지도함으로써 학습부진을 예방할 수 있다.
-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질집단 협력수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알고 있다.
-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과 도움을 주기 위해, 누구에게, 어떤 자원을 요구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

❑ 교육과정 재구성
- 학교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 자신의 교과 내에서 지식, 탐구, 실천을 통합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 교육과정 통합
- 삶과 앎이 하나 되게 교육과정을 통합할 수 있다.
- 다른 교사들과 협력하여 주제중심 통합수업을 기획하고 실현할 수 있다.

❑ 평가의 목적 이해
- 좋은 평가방식이 좋은 수업을 유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평가의 주된 기능은 선별이 아니라 발달임을 알고 있다.

❑ **다양한 평가방식**

- 전인교육에 입각하여 학생의 지성적, 감성적, 시민적, 신체적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학생 수행 결과를 효과적으로 기술하고 학부모와 교육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수행평가, 과정중심평가, 참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학생의 성장과 사회적 배경**

- 학생의 성장에 미치는 사회적 배경의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협력적 교실 문화를 만들 수 있다.
- 사회양극화를 지양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정의와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 **다양성과 다문화**

- 다문화, 글로벌화 등 인구구성과 삶의 환경의 다양성에 대해 알고 있으며, 교육활동에 있어서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한다.
-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사회가 가져 올 기회와 위험이라는 양면성을 파악하고 있다.
- 고양된 인권의식을 가지고 학생의 인권과 학교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 **다양한 교수방법과 공학**

- 수업의 특성과 맥락에 가장 적합한 교수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며, 자신이 선택한 교수방법이 왜 중요한지 정당화할 수 있다.
- 다양한 공학적 발전을 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수업에서 정보화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

❑ **교사학습공동체**

- 수업과 학교의 변화,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교사학습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알고 있다.
- 교사가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여 수업, 교육과정, 평가에 있어 끊임없이 전문성을 계발하고자 노력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가정-학교-지역사회**

-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왜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 한 학생을 온전히 성장시키기 위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 **청소년 발달에 대한 이해와 상담**

- 청소년의 발달 과업과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고충의 원인과 현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학생의 심리적, 신체적 고충 또는 장애가 발견되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 교사가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 어떤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할지에 대해 알고 있다.

❑ **태도**

- 시대의 변화와 전체 사회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 교사의 권리와 의무 등 윤리적, 법적, 전문적 자율성과 한계를 알고 있다.
- 자신의 교육적 활동과 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성찰하는 태도를 지닌다.

2. 경희 교사교육 기준

경희교사교육기준이란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대학원생에게 교사전문성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교육대학원이 제공해야 할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운영 기준이다.

❑ 교육과정 운영 원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은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리에 기초하여 교사교육을 제공한다.

(1) 교육과정

우리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은 ① 교직과목, ② 교과내용학, ③ 교과교육학, ④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 등 4개 교육 영역을 깊이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동시에 각 영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2) 수업

우리 교육대학원의 수업은 지적 전수를 위한 강의와 토론 중심 수업을 조화롭게 활용하되, ① 이질집단 협력학습, ② 문제기반학습, ③ 학교현장과 연계된 학습 ④ 성찰적 사고력을 촉진하는 수업 운영 방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3) 평가

우리 교육대학원의 평가는 교육의 목표 달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타당도를 높인다. 교육대학원에서의 평가방식이 예비·현직 교사들의 향후 평가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① 수행평가, ② 과정중심평가, ③ 참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한다.

❑ 제공되어야 할 교사전문성 및 역량 습득 기회

이상과 같은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운영 원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영역에서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1) 전문성

-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수업-평가 자체가 훌륭한 교육과정-수업-평가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수업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 및 교과교육론과 연계되어야 한다.
- 교육대학원은 학생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을 신장시킨다.
- 교육대학원은 학생들의 수업 설계 및 실행 능력을 신장시킨다.
- 교육대학원은 학생들의 평가 전문성을 신장시킨다.

(2) 공동체성

- 교육대학원의 강의는 학생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교육대학원은 학생회 활동, 다양한 학습소모임, 봉사활동, 해외탐방 활동 등에 있어 학생들의 자치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3) 현장성

- 교육대학원은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 교육대학원은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 교육대학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 환경 변화를 파악하여 이를 교육과정이나 각종 프로그램에 반영한다.
- 교육대학원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둔 교과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 교육대학원은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등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성찰성

- 교육대학원은 예비·현직 교사들이 성찰적 교사로서 지녀야 할 인문학적 소양을 지닐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교육대학원은 예비·현직 교사들이 다문화 학생, 장애 학생, 소외 학생 등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교육대학원은 예비·현직 교사들이 교육봉사, 학교현장실습, 특강, 체험활동 등을 통해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교육대학원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학습 증진을 위하여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협력적으로 실천하는 교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생윤리헌장

본 교육대학원은 전인적인 역량을 갖춘 교사양성 및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아래의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생명 윤리)

- 우리는 자신 및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삶을 존중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삶을 배려하겠습니다.
- 우리는 서로에게 모범을 보이는 말과 행동으로 생명 존중을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학교에서 인간의 생명이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며 교육받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위협하는 사회 환경적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윤리)

- 우리는 모든 사람의 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 우리는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을 차별하거나 억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나이나 지위, 힘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피해를 주지 않고, 성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외모에 대한 평가, 수치감이나 굴욕감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성희롱, 성추행, 성차별,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 등 미성년자나 신체, 정신,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학문 윤리)

- 우리는 논문이나 과제물의 내용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위조, 변조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 방법, 내용, 표현, 결과 등을 정확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표절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다른 교과목에서 이미 제출한 과제물을 새로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하나의 과제물로 이중의 이득을 취하려는 중복제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시험에서 남의 답안을 보거나 허락되지 않은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부탁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시험을 보는 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석사학위 취득

1. 석사학위 취득요건

구분	(1) 학위논문 제출자	(2) 논문대체 이수자
수료요건	1. 5기 이상 정규 등록 2. 전공과목 16학점(8과목) 이상, 교직과목 8학점(4과목) 이상, 총 24학점 이상 취득 3.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80점 이상	<학위논문 제출자와 동일>
졸업요건	1. 상기 수료요건 충족 2. 종합시험(전공시험, 교직시험) 합격 3. 논문학점(6학점) 이수	1. 상기 수료요건 충족 2. 종합시험(전공시험, 교직시험) 합격 3. 논문대체과목[6학점(3과목)] 이수, 각 과목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
교원자격 취득요건	1. 교원자격증 취득에 관한 사항은'교원자격증 취득 기준'참조 2. 석사학위 취득요건과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졸업 시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기타	1. 시간표 편성 상 매 학기 최소 전공 2과목, 교직 1과목 이수 2. 선수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을 위한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산정 시 제외 3. 평생교육전공은 교직과목을 전공과목으로 대체 이수 가능	

2. 졸업이수학점 (석사과정 취득)

과정구분	수학연한	전공학점	교직학점	논문	계
(1) 학위논문 제출자	2.5년	16학점 이상 (8과목 이상)	8학점 이상 (4과목 이상)	논문지도 6학점 (1과목)	30학점 (13과목)
(2) 논문대체 이수자	2.5년	16학점 이상 (8과목 이상)	8학점 이상 (4과목 이상)	논문대체과목 6학점 (3과목)	30학점 (15과목)

3. 종합시험

가. 용어 이해

논문심사와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필수 시험

나. 신청자격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3학기 이상 이수

▷ 전공 12학점 이상, 교직 6학점 이상 이수

▷ 전체평균평점(백분위) 80점 이상

다. 신청기간

▷ 수강신청 : 수강신청 및 수강 정정기간 (4기 이상 학생)

▷ 과목신청 : 학사일정 상 지정된 기간에 신청(통상적으로 1학기 : 3월 초, 2학기 : 9월 초)

라. 종합시험 과목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경희대학교 Info21 포털 로그인 → 학적 → 졸업 → 종합시험 → 본인 전공에 해당하는 전공 2과목(지정), 교직 2과목 (선택)

마. 합격기준

▷ 전공시험 2과목, 교직시험 2과목 각 과목마다 80점 이상 취득한 경우 Pass

▷ 각 과목별로 합격 인정

※ 80점 미만인 과목은 다음 학기에 해당 과목을 다시 응시하여 80점 이상 취득해야 하며, 해당과목이 출제되지 않은 경우 다른 과목으로 응시 가능함

바. 기타 : 종합시험 통과자에 한하여 논문 제출 가능

4. 논문이원화 제도(논문제출 or 논문대체과목 수강 중 선택)

▣ 석사학위 논문제출

가. 용어 이해

논문 제출에 따른 절차를 모두 마치고,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는 것

- ○ 2기 : 논문예비계획서 제출 및 논문지도교수 배정
- ○ 3기 : 논문지도결과보고서 제출 – 논문지도를 받은 내역을 제출함(월 1회 이상)
- ○ 4기 : 논문공개발표보고서 제출 – 작성된 논문으로 공개발표 후 결과를 제출함
- ○ 5기 :「논문지도」과목 수강신청(수강신청 및 정정기간) 및 최종 석사학위 논문 제출

나. 신청기간

학사일정표 상 공지된 기간에 기수별 계획서 또는 신청서 제출

다. 논문제출 프로세스

기수	과정
2기	**□ 논문예비계획서 제출 및 논문지도교수 배정** 1. 절차 논문예비계획서 제출 → 논문지도교수 배정 → 논문지도교수 확인(경희대학교포털) 2. 논문지도교수 배정여부 확인방법 ○ 경희대학교 포털 → 학적 → 논문 → 논문지도교수조회 ○ 지도교수 연락처 찾기 : 경희대학교 메인홈페이지 → 찾아보기(우측상단 돋보기 모양) → 지도교수 성명 기재 후 조회(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도교수 소속 확인) ○ 2기 논문지도교수 배정 후에는 논문지도교수 연락처를 확인하여 지도교수께 논문지도 요청 및 일정을 정해야 함 (논문 지도교수가 먼저 학생에게 연락해서 지도일정을 확인하지 않음) ※ 논문지도교수가 변경되는 경우,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행정실로 제출 3. 유의사항 ○ 논문예비계획서 작성 시 연구동기, 가제목, 가목차, 연구일정, 희망지도교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함(논문주제에 따라 지도교수가 선정됨) ○ 논문주제 및 해당학과의 여건을 고려하여 논문지도교수가 배정되는 사항이므로, 희망지도교수로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전공주임교수 논문지도교수 배정 진행)
3기	**□ 논문지도결과보고서 제출** 1. 절차 매월 1회 이상 논문지도 후 지도내용 기재 → 논문지도교수 서명 날인 → 학사일정 상 지정된 기간에 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 2. 유의사항 ○ 논문지도는 월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함(월 1회 미기재 시 제출 불가)

기수	과정
	○ 논문지도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논문지도 결과보고서는 미이수로 4기에 제출하는 논문공개 발표보고서 제출 불가 ○ 월별 평가내용은 반드시 지도교수가 작성
4기	**□ 논문공개발표보고서 제출** 1. 절차 논문지도를 통해서 준비한 논문을 재학생 및 논문제출자를 대상으로 공개발표 → 논문공개발표 결과 및 논문지도교수의 서명 날인 → 지정된 기간 내에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2. 유의사항 ○ 논문공개발표 보고서는 반드시 공개발표 일시 및 장소가 기재되어야 함 ○ 논문공개발표는 개별 또는 해당 전공 전체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공개발표일은 해당 전공발표 대상 및 전공주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함 ○ 논문지도교수가 연구년 등으로 인하여 해외에서 지도하는 경우에라도, 공개발표를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논문공개발표 보고서 미제출 시 논문제출 불가 ○ 평가내용은 반드시 지도교수가 작성함
5기	**□ 논문 제출** 1. 절차 가.「논문지도」과목 수강신청 (수강신청기간 중) 나. 청구논문 제출승인서 제출 → 논문 심사비 입금 다. 심사용 논문 제출 - 심사 2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직접 전달 - 내용이 완성된 논문을 링제본하여 제출 ※ 논문 관련 세부사항은 전공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 요망 - 프로그램 : 경희대학교 포털 로그인 → 학적 → 논문 → 청구논문제출 신청 → 지도교수 승인 → 행정실 승인 → 논문심사비 입금(가상계좌, 12만원) 라. 논문심사 - 전공별 진행되며, 일정은 전공대표를 통해 개별 확인 마. 심사결과보고서 행정실로 제출(심사주심교수가 제출) 바. 논문 제본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사. 학위논문 중앙도서관으로 제출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d-collection)에서 학위논문 데이터 입력 - 학위논문 하드커버 3부(원본 1부, 사본 2부), 온라인 제출확인서, 학위논문 저작권 동의서,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학위논문 공개 유예 사유서(선택) 제출 아. 학위논문 제출 증빙서류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 중앙도서관에 학위논문 제출 시 받은 학위논문 제출 확인서,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제출

기수	과정
	2. 유의사항 ○ 논문대체로 변경코자 하는 경우 5기 수강신청 전까지 [논문대체과목신청서]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 5기에 논문 미완성 등의 사유로 논문심사를 다음 학기에 진행하는 경우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논문심사 전에 행정실로 논문심사 포기서와 심사비 환급계좌사본 1부 제출 ※ 논문심사위원회가 심사한 경우 심사비 환불 불가 ○ 5기에 논문심사를 마친 후에도 최종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논문 미제출 사유서]를 행정실로 제출

▣ 논문대체과목 이수

가. 용어 이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전공 또는 교직 3과목을 이수하여 소정 요건 충족 시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것

나. 신청시기

2기 논문대체승인신청서 제출기간에 신청하여 논문대체여부를 승인받음

→ 5기 시작전에 논문대체과목(이수구분 66) 수강신청 후 논문대체과목 3과목(6학점) 수강

※ 논문제출 선택한 자가 논문대체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4기까지 논문대체제도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변경 가능

다. 이수요건

○ 3과목(6학점) 각 80점 이상 성적 취득

※ 미취득 시 해당 과목을 다시 수강해야 함. 과목 미 개설 시에는 다른 과목 이수 가능

※ 수업연한 초과 수강 시 교육대학원 내규 제14조(추가등록)에서 정한 등록금 납부 요

○ 수강과목

논문대체과목은 교육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으로 수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수강가능한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 전공주임교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본인 전공과 관련된 학부 또는 타 대학원의 과목으로 이수 가능

* 미술교육전공(서울)은 논문대체과목(미술교육연구방법론, 미술실기교육방법론)이 지정되어 있음 (단, 지정과목을 기 이수하였다면, 다른 과목을 논문대체로 선택하여 이수)
* 영어교육전공(국제)은 학과 연구발표를 통과해야 논문대체 신청이 가능함 (4기 공개발표보고서까지 제출 완료해야 논문대체 신청 가능)
* 교육실습과목(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은 논문대체과목으로 신청 불가함

○ 이수구분 변경 신청 : 수강신청 시 과목의 이수구분을 논문대체과목(66)으로 변경 신청

○ 전공 2과목, 교직 1과목 이수 권장

라. 수료생의 논문대체제도 신청 방법

○ 논문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와 상담 후 논문대체승인신청서에 서명을 받아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 등록금고지서 및 수강학점생성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 전공 또는 교직과목 3과목(6학점)을 수강신청
- 논문대체과목은 교육대학원에서 개설된 전공과목 또는 교직과목 이수를 원칙
- 수강신청 시 3과목(6학점)을『논문대체과목(66)』으로 이수구분을 변경하여 신청
- 교육실습과목(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등)은 논문대체과목으로 신청 불가

○ 등록금 납부 후 강의를 수강하고 각 80점 이상 취득

○ 양성전공의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기준 충족 여부 확인 후 논문대체 승인 여부 결정

마. 유의사항

○ 논문대체과목은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됨

- 예를 들어 4기까지 수강 내역 중 기본이수과목 4학점이 부족하다면, 4학점은 교원자격증 취득과목으로 선택하여 수강 가능하며, 이때 이수구분은 전공(04,05)이 아닌 논문대체과목(66)으로 신청. 단 교육실습 과목은 논문대체 과목으로 신청 불가

○ 논문대체제도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박사학위과정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람

○ 논문대체승인 후 논문제출로 변경은 불가하므로 심사숙고 후 결정해야 함

○ 논문대체과목은 논문제출 자격이 인정되어야 5기에 논문대체과목 3과목을 일괄 수강할 수 있으나, F학점 등으로 인하여 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경우 논문대체과목을 나누어 수강신청 할 수 있음(단 6기에 이수하는 과목에 대해 추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 6기에 논문대체학점을 추가로 이수하는 경우 장학혜택은 제공되지 않음(모든 장학은 수업연한인 5기까지만 제공됨)

1. 전공별 취득 가능 교원자격증 종별 안내

학위	캠퍼스	전 공	교원자격증		비고
			취득가능 자격증	표시과목	
석사 학위 과정	서울	국어교육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물리교육		물리	
		미술교육		미술	
		상업교육		상업	
		생물교육		생물	
		수학교육		수학	
		역사교육		역사	
		영어교육		영어	
		음악교육		음악	
		일반사회교육		일반사회	
		화학교육		화학	
		영양교육	영양교사(2급)	-	
		유아교육	유치원 정교사(2급)	-	
		상담심리	전문상담교사(1급)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	
		교육심리	-	-	
		교육정책및리더십	-	-	
		박물관·미술관교육	-	-	
		보건교육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	-	한국어교원(2급)
	국제	수학교육	중등학교 정교사(2급)	수학	
		영어교육		영어	
		중국어교육		중국어	
		디자인교육		디자인	
		체육교육		체육	
		유아교육	유치원 정교사(2급)	-	
		교사리더십	-	-	
		실용음악교육	-	-	
		평생교육		-	평생교육사(2급)
		혁신교육	-	-	

※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은 국립국어원장이,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

2. 자격증 취득 자격 및 취득 요건

가. 교원자격증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관련)

자격종별	자격기준	취득요건
중등학교 정교사(2급)	•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2호] - 학부 전공과 교육대학원 전공이 일치 또는 유사한 자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요건 충족
중등학교 정교사(2급) 부전공	• ④ 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제4항]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요건 충족
유치원정교사 (2급)	•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3호] - 유아교육 전공자만 해당 -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요건 충족
전문상담교사 (1급)	• 1.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 상담심리 전공자만 해당	전문상담교사 (1급)양성과정 이수과목 및 학점 충족
영양교사 (2급)	• 2. 영양사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영양교육 전공자만 해당	영양교사(2급) 양성과정 이수과목 및 학점 충족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은 표시과목의 대학 관련 학과(전공) 출신만 가능
학부 표시과목 비관련 학과(전공)를 졸업 후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나. 국가자격증

자격증명	자격기준	취득요건
한국어교원 (2급)	• 한국어학과를 전공하고 분야별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자만 해당	자격요건 분야별 소정 학점 이수
평생교육사 (2급)	• 대학원에서 평생교육을 전공하고 필수과목을 이수한 자 - 평생교육 전공자만 해당	자격요건 필수 과목 이수

3.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가. 주전공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유치원, 중등, 영양, 전문상담교사)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2020학년도 입학자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 유치원, 초등, 중등,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유치원, 초등, 중등에 한함 ※ 영양, 전문상담은 교과내용 영역만 50학점 이상	• 유치원, 초등, 중등,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유치원, 초등, 중등에 한함 ※ 영양, 전문상담은 교과내용 영역만 50학점 이상	• 2013~2020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 2013~2020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 2013~2020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기타 세부 내용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2013.3.1. 이후 졸업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1회를 받아야 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단, 2016.03.0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성인지 교육 - 2021.02.0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 설명 : 2021.03.01.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3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2회 실시하며, 3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예. 2021-1학기 3기인 경우 2회 해당)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 2021.0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필수		

나.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상담심리전공자 중 교원양성과정 입학생만 해당

<table>
<tr><th>구분</th><th>합격기준</th></tr>
<tr><td>자격기준</td><td>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td></tr>
<tr><td>검정대상</td><td>•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td></tr>
<tr><td>이수학점</td><td>•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과 관련된 과목에서 이수한 다음 각 목의 학점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 18학점 이상 (※ 단, 본교는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를 2학점으로 운영하여 총 20학점 이상)</td></tr>
<tr><td>이수과목</td><td>
<table>
<tr><th>구분</th><th>영역 또는 과목</th><th>소요최저이수</th></tr>
<tr><td rowspan="2">필수</td><td>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td><td>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td></tr>
<tr><td>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 이수는 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로 고시로 정하나, 본교는 2학점 과목으로 운영</td><td>2학점
(1과목)</td></tr>
<tr><td>선택</td><td>아동발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이상심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td><td>4학점 이상
(2과목 이상)</td></tr>
<tr><td>기타</td><td>•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 이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
- 2021.02.0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설명 : 2021.03.01.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3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2회 실시하며, 3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예. 2021-1학기 3기인 경우 2회 해당)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 2021.0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td><td>필수요건</td></tr>
<tr><td>합계</td><td colspan="2">20학점 이상 (10과목 이상) 이수</td></tr>
</table>
</td></tr>
</table>

※ 유의사항 : 상담심리전공은 휴학 시 필수과목 개설 학기 불일치로 수학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이수대상자 : ①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영양·보건·전문상담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원자격증에 해당하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학교급.표시과목 일치)이 있는 자(「초·중등교육법」의 개정, 2007.8.3.) ② 현직 교원은 아니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실습과목으로 논문대체과목으로 이수가 불가함 3~4기에 개설되는 경우 전공 3과목(6학점)을 수강신청 및 이수 가능함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 기 소지한 경우 재취득 불가

※ 매학기(1~4기) 석사졸업 기준에 해당하는 교직과목 1과목을 이수해야 함

※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 학위수여일에 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이수확인서를 받아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무시험검정 신청서, 마약류 검사 진단서, 성범죄이력 확인서 서류를 구비하여 본인이 직접 해당 시도교육청에 신청

다. 한국어교원자격증(2급) 이수요건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자만 해당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제13조제1항관련)

번호	영역	과목명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1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3~4학점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한국어교수법*	9~10학점
4	한국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한국고전문학연구*	2~3학점
5	한국어교육 실습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2~3학점
합계			18학점

※ 5영역 '한국어 교육 참관 및 실습' 과목은 4기에 이수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전공생은 4기에 전공 3과목 6학점 이수 가능)

※ * : 대학 신청 추가 인정 과목

※ 매학기(1~4기) 석사졸업 기준에 해당하는 교직과목 1과목을 이수해야 함

※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 졸업 및 성적증명서, 심사신청서 서류 구비후 국립국어원으로 신청

-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로 발급

라. 평생교육사자격증(2급) 이수요건

- 평생교육 전공자만 해당

구분	과목명	이수학점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	15학점(5과목)
기타	○ 과목은 학점당 3학점으로 이수 ○ 전체 이수과목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은 졸업학기에 교육대학원에서 신청서 일괄 취합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발급 신청

4.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중등정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 영양교사2급>

가.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교육부고시 제2020-240호(2020.10.30)]

전공	관련학과(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국어	국어교육, 국어국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 국어교육론 (2) 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3) 국문학개론, 국문학사 (4) 문학교육론(소설교육론 또는 시가교육론 또는 희곡교육론 또는 수필교육론) (5) 의사소통교육론(표현교육론, 이해교육론)	(1)~(5)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역사	역사교육, 역사학 및 관련되는학부(전공·학과)	(1) 역사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2) 역사학방법론(역사학개론, 사료강독) (3) 분야사(한국근현대사, 한국사회경제사, 한국사상·문화사, 한국대외교류사, 동서교류사, 사학사) (4) 한국사(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세사, 한국근대사) (5) 세계사(동아시아 고대사, 동아시아 중세사, 동아시아 근세사, 동아시아 근대사, 서양고대사, 서양중세사, 서양근대사, 인도.동남아시아사, 서남아시아.아프리카사, 아메리카사) (6) 현대사(한국현대사, 동아시아현대사, 서양현대사, 20세기현대사, 현대세계와 한국)	(1)-(6)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일반사회	사회교육, 일반사회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일반사회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정치와사회(또는 정치학), 경제와사회(또는 경제학), 문화와사회 (또는 문화인류학), 법과사회(또는 법학), 사회과학방법론, 인간과사회(또는 사회학), 인간과행정(또는 행정학), 시민교육과사회윤리	-
수학	수학교육, 수학, 전산통계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수학교육론, 정수론, 복소해석학, 해석학, 선형대수, 현대대수학, 미분기하학, 기하학일반, 위상수학, 확률및통계, 조합및그래프이론	-
물리	과학교육, 물리교육, 물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물리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역학, 양자역학, 전자기학, 열및통계물리, 파동및광학, 전산물리, 현대물리학, 물리교육실험	-
화학	과학교육, 화학교육, 화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화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물리화학, 물리화학실험, 유기화학, 유기화학실험, 무기화학, 무기화학실험, 분석화학, 분석화학실험	-

전공	관련학과(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생물	과학교육, 생물교육, 생물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생명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세포학, 발생학, 식물생리학, 동물생리학, 유전학, 분류학, 생태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물화학	-
영어	영어교육, 영어영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영어교육론(또는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 또는 외국어교육론),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영어문법(또는 영어문법지도법), 영어회화(또는 실용영어, 또는 영어말하기지도법), 영어작문(또는 영어쓰기지도법), 영어독해(또는 영어읽기지도법), 영어음성음운론, 영미문화	-
음악	음악교육, 음악 및 관련되는학부(전공·학과)	음악교육론, 음악(국악)교수법*, 전공실기, 국악실기, 시창.청음, 국악가창지도법, 합창.합주지도법, 국악개론, 국악사, 서양음악사, 화성법, 음악분석및형식론, 장구반주법, 피아노반주법	-
미술	미술교육, 미술 및 관련되는학부(전공·학과)	미술교육론, 현대미술론, 소묘, 색채학, 한국화, 서양화, 조소, 공예, 디자인, 판화, 표현기법, 서예, 영상(또는 애니메이션), 미술사(한국, 동양, 서양미술사 포함)	-
상업	상업교육, 상경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 상업교육론,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2) 경제학원론, 상업경제 (3) 회계원리, 회계이론, 세무회계 (4) 경영학원론, 마케팅관리론, 재무관리 (5) 무역학개론, 무역영어, 무역실무 (6) 회계정보처리론, 전사적 자원관리(ERP)	(1)분야 필수 (2)~(6) 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중국어	중국어교육, 중어중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중국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중국어학개론, 중국문학개론, 중국어문법, 중국어회화, 중국어작문, 중국어강독, 한문강독, 중국어권문화	-
디자인	디자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 디자인교육론, 색채학, 스케치기법 (2) 조형, 디자인제도, 컴퓨터그래픽, 3D 모델링, 그래픽디자인, 영상디자인 (3)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실내디자인, 가구디자인, 공간디자인, 디스플레이, 공공디자인, 웹디자인	(1)분야 필수 (2)분야에서 3과목 이상 이수 (3)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체육	체육교육, 체육학, 무용(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체육교육론, 체육사·철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체육측정 평가, 건강교육, 무용교육, 운동실기, 특수체육, 운동학습 및 심리(또는 스포츠심리 및 운동학습), 여가레크리에이션,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

전공	관련학과(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유치원 정교사 (2급)	유아교육학, 아동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권리와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부모교육, 유아안전교육	-
영양 교사 (2급)	영양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 영양교육및상담실습 (2) 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3) 단체급식및실습, 식품위생학 (4) 영양판정및실습, 식사요법및실습 (5) 식품학, 조리원리및실습	(1)에서 1과목, (2),(3)에서 각 2과목 이상, (4),(5)에서 각 1과목 이상

※ 시행근거: 교육부고시「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 과목명 뒤 괄호 안에 표기된 과목을 과목명 또는 괄호 안에 표기된 과목과 중복해서 이수한 경우, 이수과목은 해당분야 한 과목으로 인정되고, 학점은 모두 인정됨

나. 유의사항

1) 기본이수과목 중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역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전체 전공학점 50학점 이상에는 중복하여 산입할 수 없음

2) 표시과목 '상업'의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은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되나, 교과교육영역 과목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3) 표시과목 '음악'의 '음악(국악)교수법' 및 '음악교육론'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기본이수과목으로는 인정되나, 교과교육영역 과목으로는 인정되지 않음.('음악교과교수법' 혹은 '음악교과교육론' 과목을 교과교육영역 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교과교육영역 과목으로 인정됨)

4) 입학년도에 대한 해석

- 신입학 : 신입학한 학년
- 재입학 : 재입학을 통해 입학한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신입학 학년도

(예 : 2016학년도 신입학한 학생이 제적 후 2022학년도 1학기에 2기로 재입학한 경우, 학생의 입학년도는 '2021학년도'가 됨)

5. 전공과목의 이수

가. 적용대상 : 초중등교육법 별표2 관련 정교사(2급) 또는 2급 이상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대상자

나. 전공이수학점 : 50학점 이상

- 자격증 표시과목 관련 전공의 전공과목(예: 전공필수, 전공선택)의 취득학점
- 교육대학원 입학전 학부 또는 대학원 등에서 관련학과(또는 전공)를 졸업하고 취득한 전공과목을 포함

다.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기본이수과목 정의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이나 석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표시과목별(또는 자격종별)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전공과목
- 기본이수과목 지정 근거 : 교육부 고시로 정함
- 기본이수과목의 이수학점 적용기준(교육대학원)

입학기준	정교사(2급) 또는 교사(2급)	고시번호
1999학년도 이전	9학점 이상(3과목 이상)	제1997-11호(1997.12.9.)
2000~2008학년도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	제2000-1호(2000.1.28.), 제2004-5호(2004.6.9.)
2009학년도 이후	※ 교육대학원: 14학점(5과목) 이상	제2007-161호(2008.01.08.), 제2009-29호(2009.07.13.), 제2009-37호(2009.09.23.), 제2012-27호(2012.11.21.), 제2014-43호(2014.05.26.), 제2015-73호(2015.10.01.), 제2016-106호(2016.12.23.), 제2017-126호(2017.08.30.), 제2020-240호(2020.10.30.)

※ 1999학년도 이전 입학기준은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참조

라. 교과교육영역

구분	과목명	교육대학원 이수학점
교과교육 영역	(전공명)교과교육론 (전공명)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전공명)교과교수법 또는 (전공명)교과논리및논술	6학점(2과목) 이상 입학기준 : 2009학년도 이후

※ 서울캠퍼스 : 학부(주간) 또는 교육대학원 개설과목으로 수강신청 (학부 과목 신청 시 이수구분을 선수과목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것). 교육대학원 강좌로 개설된 전공은 교육대학원 개설과목으로 수강신청해야 하며, 그 외 전공은 학부(주간) 개설과목으로 신청함

※ 국제캠퍼스 : 교육대학원 개설과목으로 수강신청 (목요일 개설)

※ 2008학년도 이전 입학기준은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참조

6. 교직과목의 이수

가. 적용대상 : 모든 2급 이상 교원자격 취득예정자(단, 실기교사 제외)

나. 이수기준

입학기준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합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4학점 이상	4학점 이상	22학점
2013~2016학년도 입학자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6학점 이상	4학점 이상	22학점
2017학년도 입학자 이후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6학점 이상	4학점 이상	22학점

다. 세부이수기준 : 정교사(2급) 및 교사(2급) 최저이수기준

입학기준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합계
2009 ~2012 학년도 입학자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생활지도및상담, 기타교직이론에관한과목	○4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 교직실무(2학점 이상)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22 학점
2013 ~2016 학년도 입학자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생활지도및상담, 기타교직이론에관한과목	○6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 교직실무(2학점 이상) -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2학점 이상)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22 학점
2017 학년도 입학자 이후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생활지도및상담, 기타교직이론에관한과목	○6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 교직실무(2학점 이상)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2학점 이상)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 18학년도 입학자 이후 :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	22 학점

※ 2008학년도 이전 입학기준은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참조

7. 교육실습 이수

가. 교육봉사활동

1) 의미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교과목 제한은 없음
2) 봉사활동 기간 : 재적기간 중 수행 봉사활동 인정 (재학+휴학)
3) 활동 인정기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예)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 비영리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 수행 시 비영리기관확인서, 봉사관련 프로그램 브로슈어 또는 팜플렛, 무보수 봉사 확인서(홈페이지 양식, 기관장 직인 포함) 각 1부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4) 교육봉사 인정 활동
   가) 인정 활동
      -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지도, 방과후 지도, 초등돌봄교실,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생활 지도 관련 활동, 진로 및 학습 멘토링, 학습부진아 지도, 논술 지도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한 경우
      -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면 봉사 활동만 인정
      - 보조교사의 경우,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학습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경우 인정
   나) 인정 불가 활동
      - 자율학습 감독, 시험 감독, 급식 지도, 등하교 지도 등
      - 학교 도서관 책 정리, 사서업무, 교무업무 보조 등 단순 봉사
      - 교육실습 기간 중 실습학교에서 이수한 교육봉사
      - 식비, 교통비 이외 보수, 수당 등 대가를 받은 활동
   다) 불포함 시간
      - 교육봉사 활동 이동시간, 사전교육, 준비시간은 불포함
5) 이수시간
   - 교육봉사 60시간 이상 (2학점)
   - 1일 최대 8시간 이내(식사시간 제외, 식사시간 포함 시 해당 시간은 제외)
6) 이수절차
   가)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 Info21을 통해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입력한 후 출력

※ 교육봉사신청 : 경희대학교 포털 → 수업/성적 클릭 → 교육봉사활동 클릭 → 교육봉사활동 하단 '등록' 버튼 클릭하여 교육봉사활동 내용 작성 → 저장 → 출력 → 날인 → 행정실 제출 → 승인
- 해당기관 담당자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나)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 Info21을 통해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출력 후 행정실 제출
- 교육봉사일지 수령 및 계획서 승인여부 확인 필수 (미승인 시 실습 진행 불가)

다) 교육봉사활동 실시
- 1~4기 중 60시간 실시하고, Info21을 통해 교육봉사활동 결과 입력(10개 입력시 10개 단위로 생성)

라)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 교육봉사 활동을 마치는 학기에 학점인정을 위해 교육봉사 과목 선수학점으로 수강신청

마) 교육봉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 Info21을 통해 교육봉사활동 결과보고서 출력 및 봉사기관 확인(기관장 직인 날인)
- 봉사일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교육봉사활동 평가지 행정실로 제출
- 교육봉사활동 과목 Pass 여부 확인

※ 봉사활동 담당자 또는 도장 변경 시 사유서 제출

※ 교육봉사결과보고서 입력 : 경희대학교 포털 → 수업/성적 클릭 → 교육봉사활동 클릭 → 관리 클릭 → 교육봉사결과서 조회화면에서 "열추가"하여 활동일자별로 [시작시간], [종료시간] 입력 후 저장 →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출력 → 날인 → 행정실 제출 → 검토 후'교육봉사활동'과목 PASS 처리

7) 2023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관련 일정(2023-2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자 대상)

일 정	내 용	비고
2023.9.14(목)	교육봉사활동 사전 오리엔테이션	추후 일정 변동 가능 (변동 시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 예정)
2023.12.7(목)	교육봉사활동 사후 평가회	
2023.12.5(화)~12.11(월)	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 및 실습일지 제출	

8) 기타 유의사항

가) 봉사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 봉사기관이 달라질 경우 계획서를 따로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교육봉사일지는 하나로 작성(상단에 달라진 봉사기관 명시)
- 같은 기관에서 기간 차이를 두고 봉사하는 경우에는 계획서 별도 제출 불요

나) 봉사활동 신청자는 행정실에 Info21에서 출력한 교육봉사계획서(원본)를 제출하여 반드시 사전에 승인요청 (교육봉사계획서 승인 이후 시점에 실시한 봉사활동만 인정)

다)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담당교사'날인은 일치해야 하며, 담당교사 변경으로 부득이 날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 시'사유서'를 함께 제출

라) 코로나19 등으로 교육봉사활동 중인 기관의 전면 비대면교육 전환 또는 임시폐쇄로 봉사활동이 부득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야만 하는 경우, 행정실로 사전연락을 통해 봉사활동 인정 여부 확인 요망

※ 교육봉사 면제는 p.48'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 면제기준'참고

나. 학교현장실습

1) 개요 :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필수 실습영역 과목으로 매 학년도 1학기에 4주간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이 일치하는 학교급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교직과목
2) 실습시기 : 매학년도 1학기(4월~5월) 중 4주간 실습을 진행하며, 각 실습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실습기간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학기는 학교현장실습이 운영되지 않음)**
3) 실습교 선정 방법 : ① 학생이 직접 선정 ② 교육대학원 협력교(병설교 및 협약교) 선정
4) 학교현장실습 추진 타임라인

시기	일정	내용
직전학기 9월	[병설교 및 협약교] 실습신청 후 최종 파견 선정	• 경희병설교 및 협약교에서 실습을 희망하는 경우 • 전공별 여석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접수 후 서류·면접과정을 통해 최종 파견자 선발
직전학기 10~11월	[일반교]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서 제출	• 개인별 실습교를 선정해 자기소개서, 실습동의서 및 실습비 청구서,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각 1부를 지정된 기간에 행정실에 제출
직전학기 2월 말	학교현장실습과목 수강신청	• 학교현장실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된 경우, 실습파견학기 교육대학원 이수구분 **교직(06)으로 신청**
당해학기 3~6월	수업수강 및 실습파견	• 수업시연, 전체특강, 실습파견, 실습평가회 등으로 진행 • 사전수업(3월), 실습(4월~5월), 사후평가회(6월)
당해학기 6월	실습 평가 및 성적부여	• 실습 종료 후 실습교에서 평가한 점수와 학교현장실습 수업 점수가 합산되어 평가

5) 학교현장실습 파견교 선정 및 신청방법
   ▷ **(일반교)** 학생 본인이 실습교(보통의 경우 모교로 정함)를 정하여 직전 학기 10~11월 중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련 공지사항 확인 후 첨부된'실습동의서'에 실습 예정교 기관장의 직인(실습동의서)을 날인받아 행정실로 제출
   ▷ **(경희병설교 및 협약교)** 직전 학기 9월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련 공지사항 확인 후 행정실로 신청 진행 (면접 과정 진행 후 최종 선발자에 한해 파견 가능)
6) 학교현장실습 신청 시 유의사항
   ▷ 반드시 교육대학원에 개설된'교직과목'으로 수강해야 함
   [이수구분 교직(06), **학부개설 과목 수강 불가**]
   ▷ 매년 1회(1학기)에 실시되므로, 가급적 4기 안에 이수해야 함
   ▷ 실습기간은 학교별 상이할 수 있으나, 반드시 5월 말까지 실습이 종료되어야 함
   ▷ 2급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실습 면제가 가능하나, 학교급이 다른 경우 불가
   예)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실습 파견 전 교과교육론,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권장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 면제기준

1. 아래 항목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학교(기관)에서 확인한 자격증 또는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교현장실습 또는 교육봉사활동 면제를 받을 수 있음

가.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전체 **면제**

* 단, 소지한 자격증과 입학한 학과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학교급이 다른 경우 교육봉사활동만 면제되며, 학교현장실습은 실시해야 함**)

* 예 : 중등학교 정교사(국어) 2급 자격증 소지자가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나. 영양교육전공자 중『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아래 [인정 가능 기관]에 명시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 업무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교육실습 면제 가능 (비정규직 학교영양사 근무 경력 또한 가능하나, 전일제 근무경력이여야 함)

* [인정 가능 기관] (초,중,고,특수학교,대학,유치원 모두 가능)

①「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어린이집 불가)

②「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③「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④「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다.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과 학교급이 같은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 면제 가능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과 학교급이 다른 동일 분야 전일제로 교육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학교현장실습은 실시해야 함**)

*'산학겸임교사 등'이란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명예교사 제외)에 해당

2.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신청 절차

▷ 상기'가'항목에 해당하여 교육실습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 해당 면제과목 수강신청만 진행(입학 시 교원자격증 제출로 증빙 완료됨)

· 수강신청 과목명 : 학교현장실습(면제), 교육봉사활동(면제)

▷ 상기'나' 또는'다'항목에 해당하여 교육실습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 수강신청 후 해당학기'교육실습 면제'신청기간 내 경력인정증명서 제출

· 수강신청 과목명 : 학교현장실습(면제), 교육봉사활동(면제)

8. 기타 이수

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란?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13학년도부터 예비교원의 교직적성과 교육자적 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2) 대상자 : 중등학교 정교사, 유치원 정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 부전공 이수 예정자

3) 이수 기준 : 재학 중 2회 통과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수료자 포함) : 적격판정 1회 이상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적격판정 2회 이상

4) 신청시기 :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학기당 1회 실시)

5) 이수과정
① 신청방법 : 수강신청 기간 수강신청을 통해 검사 신청
- 수강신청 시 첫 번째 검사일 경우'교직적성및인성검사1'신청,
두 번째인 경우'교직적성및인성검사2'신청 (첫번째 이수 후 2개 학기 이후 이수 권장)
② 검사일정 확인 : 강의계획서 및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를 참조하여 일정 확인
③ 검사시행 : 교내 전산실에서 온라인으로 시행(약 30분 정도 소요)

6)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일정
- 1학기는 4월, 2학기는 10월, 수강신청자를 대상으로 일정 안내 예정

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란?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예비교원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2) 대상자 : 중등학교 정교사, 유치원 정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 부전공 이수 예정자

3) 이수 기준 : 재학 중 2회 이수(학기당 1회 실시)

4) 이수방법
가) 교내이수
① 본교 교육대학원에서 실시하는 단체실습 이수
② 신청방법 : 수강신청 시 첫 번째 교육일 경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1' 신청, 두 번째인 경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2' 신청 (첫번째 이수 후 2개 학기 이후 이수 권장)
③ 수강신청 후 담당 교강사의 안내 및 일정에 따라 교육실습 및 이수

나) 교외이수
① 부득이한 사유로 단체실습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
② 아래 본교 인정 기관에서 개별실습 후 당해 학기 종강일까지 수료증(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③ 반드시 아래 절차 및 유의사항에 따라야 함
※ 개별실습 신청 및 실습 이수는 개인적으로 진행하며 실습비용은 본인 부담

5) 교외이수 절차 세부 내용

절차	처리주체
실습 가능 기관 및 프로그램 확인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학생**
⬇	
외부기관 「개별실습 신청서」 제출	**학생** ➜ 교육대학원
⬇	
신청 내용 확인	교육대학원
⬇	
개인별 실습실시	**학생**
⬇	
수료증(이수증) 제출	**학생** ➜ 교육대학원
⬇	
수료내역 심사 후 이수 처리	교육대학원

• 교외이수 인정가능 기관

※ 교외이수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는 경우에는 인정 불가

①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교육비 무료)

※ http://fire.seoul.go.kr/citizen/main/main.do

② 대한적십자사(교육비 유료)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이 둘 다 포함되고 수료증이 발급되어야 함

※ 대학적십자사 교육은 지역별 교육내용이 다르므로 교육시기, 지역별 세부 교육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응급처치, 심폐소생술 포함여부 확인)

※ http://www.redcross.or.kr/education_safety/education_safety_emergency.do

※ http://www.redcross.or.kr/education_search/education_search_unified.do

③ 현재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등을 이수(2018학년도부터 적용)

※ 교외이수기관 프로그램은 해당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실습 인정 기준

① 사전에『외부기관 실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건에 한해서만 인정 가능

② 수료증(이수증) 미제출 시 인정 불가(단, 서울시민안전파수꾼 이수수첩 인정가능)

③ 교육내용에 실습이 포함되어야 하고, 교육과정에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이 둘 다 포함되어 있음이 수료증 혹은 교육프로그램 상에 기재되어야 함

④ 개별실습 후 당해 학기 종강일까지 수료증(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음)

⑤ 1회에 한해서만 외부 실습 인정 가능

⑥ 1개의 실습과정이 2일 이상 진행되어도 1회로 인정

6) 2023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개최 일정

- 서울 : 교내 진행으로 매학기 초 강의계획서 및 홈페이지에 일자 안내(10~11월 중, 월 1~2회 실시 예정)
- 국제 : 교내 진행으로 매학기 초 강의계획서 및 홈페이지에 일자 안내(10~11월 중, 월 1~2회 실시 예정)

다. 성인지 교육

1) 성인지 교육이란?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교원양성기관 및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2) 대상자 : 중등학교 정교사, 유치원 정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 부전공 이수 예정자

3) 이수 기준 : 재학 중 2회 이수
- 2021.02.0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 설명 : 2021.03.01.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3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2회 실시하며, 3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예. 2022-1학기 5기인 경우 2회 해당)

4) 성인지 교육 내용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②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③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5) 교내 프로그램 : 하기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해야 함
① 성인지교육 1
② 성인지교육 2

6) 이수방법
가) 성인지교육은 구분을 위해 1과 2로 나누어 개설하며, 순서는 상관없이 중복되지 않게 이수
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연 1회를 이수
예) 2023-1학기에 성인지교육1 이수 후 2024-1학기에 성인지교육2를 이수
다) 오프라인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은 지정된 일시 경과 시 수강이 불가함
라) 교육 이수 학기에 해당 프로그램을 수강신청하고 지정된 특강을 모두 이수해야 이수 인정
마) 프로그램에 따라 과제 또는 보고서 작성이 포함될 수 있음

라.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1)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이란?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년 8월 졸업자 부터 마약 중독자 및 성범죄 전력자의 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관련법규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 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
>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대상자 : 중등학교 정교사, 유치원 정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3) 통과기준 : 결격사유 비해당

4) 확인방법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확인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의사 진단서를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 성범죄이력 관련 확인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경찰서에 공문 발송을 통해 확인

※ 전문상담교사 1급의 경우 마약류 검사 및 성범죄이력 확인서를 무시험검정 시행처인 해당 교육청으로 직접 제출

1. 학칙 열람

가. 홈페이지 https://rule.khu.ac.kr (규정관리시스템) 검색
학칙 > 대학원 >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학칙 > 특수대학원 > 교육대학원 내규

나. 교육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 대학원 소개 > 내규

2.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가. 수업연한 : 2.5년

나. 재학연한 : 없음

3. 등록안내

가. 재학생

- 등록 시기 : 학기 개시일 전 지정기간
- 등록 방법 및 절차 : 인포21 포털에서 등록금 고지서 출력 후 지정은행에 납부
- 등록 시 유의사항
  ① 등록금 고지서는 개별 발송하지 않으며, 인포21에서 개인이 직접 출력
  ② 지정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으로 처리됨
  ③ 장학금 수혜자(조교, 경희가족장학, 경희동문, 교직장학 등)는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 처리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하며, 고지서 납부금액이 '0'원이라도 <u>인포21시스템에서 반드시 "0원" 등록처리 해야 함</u>

나. 수료생

- 대상 :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제출 또는 논문대체 이수가 필요한 학생
- 논문제출자 : 별도 등록금 납부액은 없으며, 수강신청기간에 논문지도과목을 수강신청하고 논문제출 기간에 논문심사비(12만원)를 납부함
- 논문대체제도 신청자
  ① <u>등록기간 전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수강학점 및 등록금 고지서 생성 신청서 제출</u>
  ② 등록기간 : 학기개시일 전 지정기간
  ③ 등록금액 : 내규에 따라 1~3학점 신청 시 등록금 반액, 4학점이상 신청 시 등록금 전액
  ④ 등록방법 : 경희대학교 인포21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은행에 납부
  (등록금 고지서 확인불가 시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다.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방법 : 인포21 → 등록/장학 → 등록금 부과내역 → 등록금 고지서 출력

라. 교육대학원 등록 횟수 : 총 5회 필수 등록

4.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가. 한국장학재단사이트에 가입하여 로그인 후 아래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

- 한국장학재단사이트 주소 : www.kosaf.go.kr
- 학자금대출신청 → 대출승인 → 본인이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실행(계약)과 동시에 등록
  ※ 대출신청 후 대출승인을 확인한 후 반드시 대출실행 실행

나. 참고사항 :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등록금 환불 상황 발생 시, 학자금 대출을 먼저 상환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함

5. 조교 등록 절차 안내

가. 신입생 : 등록을 먼저 한 후 조교 등록기간 이후에 장학금을 본인계좌로 지급

나. 재학생 : 장학금 고지를 확인 후 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 진행

- 납부금액이 0원이더라도 반드시 등록처리 진행
- 이미 등록한 경우, 개인계좌로 지급
- 일반등록기간과 조교등록기간은 매학기 학사일정을 통해 확인
- 참고사항 : 조교 발령이 늦어 본 등록기간에 조교장학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추가등록 기간에 등록 권유

6. 등록금 반환 기준

가.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나.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4. 휴학/복학 신청

가. 휴학 신청자격 : 등록을 마친 학생에게 허가하나, 등록기간 중에는 미등록자도 가능

나. 휴·복학 신청시기 및 방법

1) 신청시기 : 1학기는 2월 중순, 2학기는 8월 중순경으로 학사일정 참조
2) 신청방법 : [Info21포털] → [학적] → [휴·복학신청]에서 신청(군입대휴학, 특별휴학의 경우 증빙 첨부)

다. 휴학 가능 횟수 : 4개학기 이내

단, 다음의 사유로 승인을 득한 경우 휴학기간 초과하여 휴학 가능

- 병역의무 이행, 임신 출산(최대 2개 학기),
  해외파견/전근(최대 3년, 단, 전근은 통학 불가 원격지에 한함)
  질병 치료(최대 2개 학기, 2차 이상 의료기관 발행 4주 이상 진단서 필요)
  기타 교육대학원장 인정 특별 사유

라. 휴학 종류

1) 학기휴학(1학기)
2) 일반휴학(1년)
3) 군입대휴학(입대기간)

마. 유의사항

1) 학기 개시일부터 21일까지 휴학 신청한 경우에만 등필 휴학으로 등록금을 복학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2) 휴학을 한 경우 복학 학기에 교육과정 상 본인이 이수한 과목이 중복되어 수강할 과목이 없을 수 있으므로 휴학 및 복학 시점에서는 전체적인 교육과정(강좌개설 예정표)을 참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함
3) 휴학일은 학기개시일 이후(3월 1일, 9월 1일)부터 적용
4) <u>신입학 한 학기에는 휴학 불가</u>

5.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기간 : 학기별 지정기간 (2월, 8월 중)

나. 요일별 개설과목 현황

구 분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서울캠퍼스	전공과목	교과교육영역과목 상담심리 실습과목 (양성과정)	교직과목
국제캠퍼스	교직과목	-	전공과목(교과교육영역 과목 포함)

다. 학기 취득학점 및 수강가능 학점

1) 학기 취득가능 학점

가) 학기 취득학점 : 6학점 이내

나) 학기취득학점 대상과목(이수구분) : 전공과목(04,05,20), 교직과목(06), 논문과목[논문지도(44), 논문대체과목(66)]

※ 학기 취득학점은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을 의미함(졸업학점에 포함)

다) 학기 추가 취득이 가능한 경우

1) 교과교육과목[교직전선(20)으로 이수 시]을 수강하는 학기에는 7학점까지 취득 가능 (양성과정 해당)

2) 5기 수료요건(1~4기중 F성적이 있는 경우 등) 미충족 시 2학점 추가 취득 가능

3) 상담심리전공, 외국어로서의한국어전공은 3~4학기 각 2학점 추가 취득 가능

4) 평생교육전공은 학기당 8학점까지 취득 가능

2) 선수과목 수강학점

가) 학기당 6학점 이내, 재학 중 28학점 이내에서 이수 가능

나) 선수과목이란 교원자격 취득 또는 특정목적을 위해 대학원 또는 학부에서 이수하는 과목, 선수과목은 학기당 취득학점 및 종합시험 응시자격 학점 산출 시 포함되지 않음

다) 신청대상자 : 교원자격증 취득 과정 이수자[양성과정(중등/유아/영양) 해당]

3) 학기 최대 수강가능 학점 :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최대 12학점 이내**

라. 이수구분 별 수강신청 방법

이수구분	수강신청내용	신청방법
전공필수 (04)	전공과목으로 교원양성과정의 경우 기본이수과목 해당 - 단, 평생교육 전공은 평생교육사자격증(2급)이수요건의 필수과목에 한하여 전공필수 이수구분코드(04)를 부여함	매학기 전공 2개 과목 수강신청
전공선택 (05)	전공과목으로 교원양성과정의 경우 기본이수과목 이외의 전공과목 해당	
교직전선 (20)	전공과목으로 양성과정의 교과교육영역 해당 과목 - 교과목명: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교과교수법, 교과논리및논술(일부전공 운영) [서울캠퍼스 학생] 학생의 학업계획에 따라 개설된 이수구분[교선(20)]을 그대로 신청 하거나 선수과목(41) 또는 논문대체과목(66)으로 이수구분을 변경 하여 수강신청 가능 [국제캠퍼스 학생] 이수구분을 변경하지 않고 수강신청, 단 논문대체과목으로 이수 시 논문대체과목(66)으로 변경하여 수강신청	교직선택(20)으로 수강신청, 이수한 경우에만 취득학점(전공학점)에 포함
교직과목 (06)	교육학 과목 * 서울 : 목요일 개설 교과목 * 국제 : 월요일 개설 교과목	- 매학기 1개 과목 수강신청 -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는 반드시 교육대학원 개설 과목으로 신청
선수과목 (41)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추가로 이수하는 과목으로 교육대학원[교육봉사활동, 학기별 교직과목 1개 초과 신청 과목, 교과교육영역 과목(전공으로 이수 가능)]과 학부에서 개설된 교직과목 또는 교과교육영역과목 신청 시 이수구분을 선수과목(41)으로 변경한 후 신청	이수구분 변경 후 수강신청 학기당 6학점, 재학중 최대 28학점까지 이수 가능
졸업논문대체 (66)	- 학위논문을 대체하여 수강하는 것으로 논문대체 제도 신청 및 승인된 자에 한하여 수강신청 가능 - 교육대학원에서 개설하는 전공 및 교직과목 중에서 이수 가능 - 교육실습 관련 과목은 논문대체로 수강신청 불가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등) - 미술교육전공은 졸업논문대체 과목 지정 운영 (미술교육연구방법론, 미술교육실기방법론)	3과목을 이수구분(66)으로 변경하여 신청

마. 중복 이수 금지

- 학수번호(수업코드)가 다르더라도 동일, 유사한 강의명을 가진 과목 간 중복수강을 금지하며 학기말 인정학점에서 취소될 수 있음
  (ex. 이상심리-이상심리학 / 일본문화-일본문화사 등)

바. 석사학위 취득 이수 수강신청 사례

<table>
<tr><th>기수</th><th>신청내용</th><th>학점</th><th>기수</th><th>신청내용</th><th>학점</th></tr>
<tr><td rowspan="2">1기</td><td>전공 2과목(4학점)</td><td rowspan="2">6학점</td><td rowspan="3">3기</td><td>전공 2과목(4학점)</td><td rowspan="3">6학점</td></tr>
<tr><td>교직 1과목(2학점)</td></tr>
<tr><td></td><td></td><td>교직 1과목(2학점)</td></tr>
<tr><td rowspan="3">2기</td><td rowspan="2">전공 2과목(4학점)</td><td rowspan="3">6학점</td><td rowspan="4">4기</td><td>논문지도결과보고서(0학점)</td></tr>
<tr><td>전공 2과목(4학점)</td><td rowspan="4">6학점</td></tr>
<tr><td rowspan="2">교직 1과목(2학점)</td><td>교직 1과목(2학점)</td></tr>
<tr><td>논문공개발표보고서(0학점)</td></tr>
<tr><td rowspan="2">논문예비계획서(0학점)
또는
논문대체과목 신청(6학점)</td><td>종합시험(전공)(0학점), 각 과목 80점 이상
종합시험(교직)(0학점), 각 과목 80점 이상</td></tr>
<tr><td>5기</td><td>논문지도(6학점)
논문심사결과보고서 및 논문제출
또는
논문대체과목 수강(6학점)
각 과목별 성적 80점이상</td><td>6학점</td></tr>
</table>

사. 교원자격증 취득 이수 수강신청 사례

<table>
<tr><th>기수</th><th>신청내용</th><th>학점</th><th>기수</th><th>신청내용</th><th>학점</th></tr>
<tr><td rowspan="6">1기</td><td>전공 2과목(4학점)</td><td rowspan="6">6학점
+
4학점
(선수)</td><td rowspan="11">4기</td><td>전공 2과목(4학점)</td><td rowspan="11">6학점
+
6학점
(선수)</td></tr>
<tr><td>교직 1과목(2학점)</td><td>교직 1과목(2학점), 학교현장실습</td></tr>
<tr><td>교직 1과목(2학점), 선수(교대원)</td><td>교직 1과목(2학점), 선수(교대원),
교육봉사</td></tr>
<tr><td>교직 1과목(2학점), 선수(학부)</td><td>교직 1과목(2학점), 선수(학부)</td></tr>
<tr><td>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1(0학점)</td><td></td></tr>
<tr><td>성인지교육 1(0학점)</td><td>교직 1과목(2학점), 선수(학부)</td></tr>
<tr><td rowspan="5">2기</td><td>전공 2과목(5학점)
-교과교육과목 전공으로 이수 시</td><td rowspan="5">7학점
+
2학점
(선수)</td><td>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2(0학점)</td></tr>
<tr><td>교직 1과목(2학점)</td><td>성인지교육 2(0학점)</td></tr>
<tr><td>교직 1과목(2학점), 선수(교대원)</td><td>논문공개발표보고서(0학점)</td></tr>
<tr><td>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1(0학점)</td><td>종합시험(전공)(0학점), 각 과목 80점 이상
종합시험(교직)(0학점), 각 과목 80점 이상</td></tr>
<tr><td>논문예비계획서(0학점)
또는
논문대체과목 신청(6학점)</td><td rowspan="2">5기</td><td>논문지도(6학점),
논문심사결과보고서 및 논문제출
또는
논문대체과목 수강(6학점)
각 과목별 성적 80점이상</td><td>6학점</td></tr>
<tr><td rowspan="6">3기</td><td>전공 2과목(4학점)</td><td rowspan="6">6학점
+
5학점
(선수)</td><td rowspan="2">무시험검정 신청서 제출
-중독여부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 포함</td><td rowspan="4">-</td></tr>
<tr><td>교직 1과목(2학점)</td></tr>
<tr><td>전공 1과목(교과교육 3학점)
-교과교육과목 선수로 이수 시</td><td rowspan="4">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행정실)
무시험검정 시행(행정실)</td></tr>
<tr><td>교직 1과목(2학점), 선수(교대원)</td></tr>
<tr><td>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0학점)</td></tr>
<tr><td>논문지도결과보고서(0학점)</td></tr>
</table>

※ 학생의 학업이수 계획에 따라 학기당 이수과목 및 학점은 달라질 수 있음

※ 원활한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4기 내에 교육대학원 및 학부(선수과목 이수)에서 상기 내용을 모두 이수를 권장함(부득이한 경우 5기에 선수과목 이수 가능)

※ 교육대학원(국제)의 경우 '교과교육과목 전공'은 3학점이 아닌 2학점에 유의

아.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1) 수강신청일 전 학번 및 비밀번호 확인
2) 다중접속 불가 : 한 개의 ID(학번)로 한 개의 IP에서만 접속, 다른 접속 발생 시 원 접속기기는 로그아웃 됨
3) 로그인 후 10분 경과시 자동 로그아웃됨
4) 수강신청 로그인 시 "대학원 수강신청 " 으로 로그인
5) 강의실이 "청"(청609)인 경우 서울캠퍼스 개설 교과목이며, "멀"(멀206)은 국제캠퍼스 교과목임(교육대학원 과목, 교직전공 과목, 유아, 수학, 영어전공 과목의 캠퍼스 유의)
6) 이수구분을 잘못 신청한 경우 본인이 수강취소 후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유의 바람
   * 본인이 수강하는 과목에 따라 이수구분을 변경하여 신청해야 함
   가) 교육대학원 전공 개설과목(2과목) :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직전선 등 이수구분 그대로 수강신청(단, 5기 이상 학생의 논문대체 과목일 경우 논문대체로 변경)
   나) 교육대학원 수요일(교과교육영역) 개설과목 : 선수과목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변경하여 신청 (서울캠퍼스 교직이수자만 해당)
   다) 교육대학원 교직 개설 교직과목 : 1과목 이상 수강 시 다음과목부터 선수과목으로 변경 (단, 5기 이상 학생의 논문대체 과목일 경우 논문대체로 변경)
   라) 학부 과목 수강 시 : 교직 및 교과교육영역 과목 모두 선수과목으로 변경
   마) 종합시험 : 월요일 과목명 [종합시험(교직)], [종합시험(전공)] 모두 그대로 신청
   바) 논문대체과목 수강 시 : 3과목 모두 이수구분을 논문대체로 변경 신청 (5기 이상 해당, 단 논문대체과목 사전승인 학생만 수강신청 가능)
   * 미술교육전공의 경우 논문대체 전공 2개과목이 정해져 있으므로 유의 바람 (미술실기교육방법론, 미술교육연구방법론 2과목 반드시 신청)
   사) 논문지도 수강 시 : 월요일 과목명 [논문지도] 그대로 신청 (5기 이상 해당, 단 논문공개발표 완료 학생만 수강신청가능, 비이수생 및 수료생은 3월 중순 일정기간 안내 후 행정실 지원 예정)
7) 수학연간 초과 재학생 및 수료생의 수강신청(0학점 포함) 안내
   - [등록금 고지서 및 수강학점 생성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교육대학원 행정실 이메일로 수강신청기간 또는 정정기간 사전 제출
   - 작성양식은 홈페이지 수강신청 안내 게시물 붙임 양식 참조
8) 재수강은'F'성적을 취득한 경우 동일과목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함
9) 교육대학원 입학 이후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학점포기는 불가함

6. 수강신청 시스템 이용 방법

가. 최초 사용자 Info21 포털 등록(학번 확인 및 비밀번호 설정 포함)

1) 사이트 주소 : https://info21.khu.ac.kr
2) 사용자 등록 : 사용자 등록 → 약관확인 → 본인인증 → 아이디 신청 → 비밀번호 등록
3) 학번 확인 : 사용자등록 화면 하단에서 조회
4) 비밀번호 변경 : Info21 로그인 → My Menu → **로그인 관리** → 비밀번호 변경

나. 수강시청 전 개설강좌 조회 방법

1) 수강신청 사이트 (http://sugang.khu.ac.kr) → 종합시간표조회(로그인 필요 없음)
2) 수강하고자 하는 [학수번호-코드] 등을 별도 텍스트로 저장하여 수강신청 시 활용

다. 수강신청 LOGIN

1) 수강신청 사이트 (http://sugang.khu.ac.kr) → 수강신청 → 대학원수강신청
   → 학번입력 → 비밀번호입력 → 로그인
2) 비밀번호 변경: Info21통합로그인 (info21.khu.ac.kr) → 개인정보 →
   비밀번호변경 (Info21) 메뉴에서 변경
   * 수강신청 전 반드시 학번 및 비밀번호를 재확인하기 바람
3) 수강신청 기간에만 로그인 가능(수강신청 2주전부터 종합시간표조회는 가능함)
4) 한 개의 아이디(학번)로 한번만 로그인 가능[이미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일 아이디(학번)로 다시 로그인 할 경우, 기존 로그인 되어 있던 접속은 끊어짐]
5) 희망과목담기는 학부학생의 수강신청관련 내용으로 교육대학원생 비해당

라. 수강신청 진행

1) 교육대학원 개설교과목 검색 및 수강신청
   가) 개설학과 선택 및 조회 후 신청
      ① 전공과목 신청 : [대학-교육대학원], [개설학과-해당학과] 선택 후 조회 → 해당과목 신청
      ② 교직과목 신청 : [대학-교육대학원], [개설학과-교육대학원 교직전공] 선택 후 조회 → 해당과목 신청
   나) [과목명]란에 교과목명 입력 후 검색 후 신청
   다) [학수번호-분반]란에 학수번호를 직접입력 및 조회 후 신청

2) 이수구분 변경 수강신청
   가) [선수과목]수강신청 : 교직이수를 위해 추가과목 이수가 필요한 경우
      -교직 1개 과목 이상 수강신청 시
      -교직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시
      -서울캠퍼스 전공 중 수요일 개설의 교과교육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신청 시
      -학부개설과목 수강신청 시 신청하는 모든 과목[교직 및 교과교육과목(해당전공)]
   나) [논문대체] : 논문대체 수강신청 시 신청하는 교과목 3개 모두 논문대체로 이수구분을 변경하여 수강신청

[이수구분 변경 화면]

3) 학부개설 교과목(선수과목) 검색 및 수강신청

가) 학부개설강좌 조회

① 교직과목 : 종합시간표 조회 → [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교육과정(서울) 또는 [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교육과정(국제) → [학과] 교직전공 → 조회 → 수강을 희망하는 교과목의 [학수번호-분반] 복사 후 별도 저장

② 교과교육영역과목(해당전공) : [대학] 해당단과대학 → [학과] 해당학과 → 조회 → 수강을 희망하는 교과목의 [학수번호-분반] 복사 후 별도 저장

나) 수강신청 : 수강신청 시스템 로그인 → 대학원수강신청 선택 → 로그인 → 학수번호 입력 → 조회 → 이수구분 변경(선수과목) → 수강신청

7. 장학제도 및 신청

가. 장학수혜 대상

1) 재학생으로 최대 5학기까지 수혜 가능

2) 5기를 초과한 재학생 및 수료생은 수혜 불가

나. 장학금 지급 기준

장학명	장 학 기 준	장학금	신청방법	이중 수혜
경희가족 장학	• 2년 이상 재직 중인 경희대학교, 학교법인 경희학원,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직원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수혜 학기 초 재직증명서 제출	불가
	• 2년 이상 재직 중인 경희의료원 및 병설학교 교직원 • 2년 이상 재직 중인 본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	등록금의 50%		
교직장학	• 현직 유치원.초·중등학교 정교사(기간제, 임시교사 제외), 교육공무원(교육과학기술부산하) ※ 유치원교사의 경우 유아교육전공 및 상담심리 전공에 한해 인정	등록금의 30%		불가
보건장학	• 보건교육전공의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정규직 간호사	등록금의 30%		불가
지역교육 장려장학 (국제)	• 국제캠퍼스 재학생 중 경기남부지역(경기1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 현직교사(혁신교육전공 제외)	50만원		가능
경희동문 장학	• 경희대학교 학부, 대학원 졸업생에게 지급 (비학위과정 수료생, 경희사이버대학교 졸업생 불가)	등록금의 13%	최초 지급 시 졸업증명서 제출	가능
우수장학	•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 지급	100만원	-	가능
학업장려 장학	• 본인이 장학수혜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자기추천한 자 중 선발하여 지급	50만원	학업장려장학 신청서 제출	가능
목련장학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및 가계곤란자 등	등록금의 일부	목련장학신청서 제출	가능
모범장학	• 원우회장 및 부회장	등록금 전액	-	불가
	• 원우회 임원 약간 명	등록금의 일부		가능
	• 비학위과정 원우회(회장,부회장,임원), 전공대표	등록금의 일부		가능

다. 신청방법

○ 교직장학, 경희가족장학, 보건장학, 지역교육장려장학(국제) : 매학기 초 재직증명서 제출

○ 우수장학 : 별도 신청 사항 없음

○ 학업장려장학 : 매학기 중순 신청기간에 학업장려장학 신청서를 제출

○ 목련장학 : 매학기 1월, 7월 목련장학 신청서를 제출

라. 유의사항

1)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 시 입학금 제외(별도표시 경우 예외)

2) 장학금은 정규학기(최대 5학기) 이내에서 지급

3) 두 가지 이상의 장학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함

Ⓐ 이중 수혜여부가 불가+불가인 경우, 상위 장학 하나만 지급

Ⓑ 이중 수혜여부가 불가+가능, 가능+가능인 경우 각각의 해당 장학금 지급

4) 교직장학, 경희가족장학, 보건장학의 경우 수혜학기 개시일에 해당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학기 중 계속 근무를 원칙으로 함

5) 목련장학금은 신청자 소득분위, 가계곤란, 장애정도, 예산배정액 등에 따라 매학기 상이함

※ 조교장학

○ 신청방법 : 행정부서별 공지사항 또는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취업게시판을 확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

○ 조교장학은 근무부서에 따라 장학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학금액 또는 비율을 반드시 직접 확인

○ 행정부서에서 조교로 채용된 후, 해당 부서에서 채용에 관한 공문(업무연락)이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접수된 경우 조교 장학으로 적용됨

○ 장학금 지급방법

-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조교 등록기간 중에 본인계좌로 지급
- 등록금을 미납부한 경우 고지서에 장학금액을 확인 후, 조교등록기간에 하나은행에서 등록
- 등록금액이 0원 일지라도 반드시 <u>은행에서 수납 또는 인포21시스템에서 "0원" 등록처리 해야 함</u>

Info21 포털 이용안내

1. 로그인 : **https://info21.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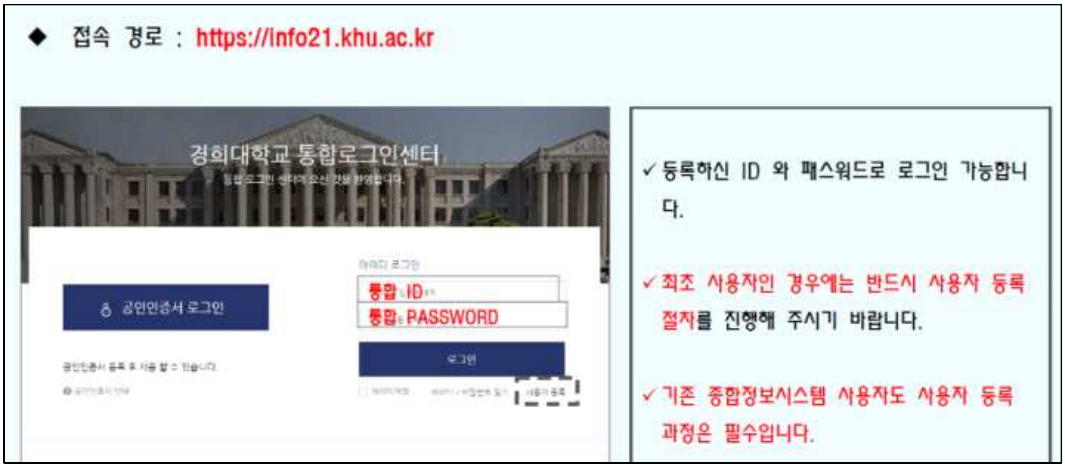

2. 비밀번호 변경 : Info21 로그인 → My Menu → 로그인 관리 → 비밀번호 변경

3. 교강사 연락처 검색 : 기본 내 교직원 전화번호 검색(화면 중간 돋보기 모양)

4. 포털 학사메뉴 (일부 학부사용 메뉴는 비활성화 상태임)
   - 학적 : 학적사항 정정신청, 학적변동(휴.복학 신청 등), 청구논문 제출 등
   - 수업/성적 : 교육과정 조회, 개설교과목 조회, 강의평가, 수강신청 조회, 성적조회, 인정학점 조회, 무시험검정신청, 교육봉사활동 등
   - 등록/장학 : 등록금 납부내역, 등록금 부과내역(고지서 출력), 교육비 납입 확인, 장학 조회 등
   - 장학 : 장학신청, 장학금 수혜내역 조회
     (포털 메인화면 상단 오른쪽 "My page"에서 본인 계좌 입력 및 인증하기)
   - Aladdin: 상담신청 및 결과 조회
   - 커뮤니티 : 포털게시판 사용, 경희대학교 각종 SNS 등
   - 주요사이트 : 자주 가는 사이트, 인터넷 신청(장소신청, 노트북 대여) 등

학생상담 체계

■ 상담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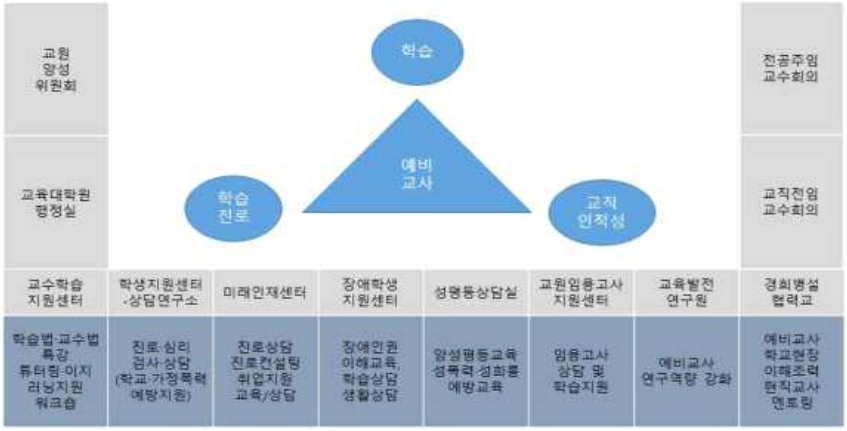

[상담지도 교수 상담신청 안내]

■ Info 21 로그인 > 상단 Aladdin > 상담신청 > 담인교수상담 > 상담신청

1. 미래혁신원 학생지원센터 (제증명)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 위치 : 청운관(종합강의동) 1층 • 전화 : 961-9335, 9336, 9337 • FAX : 961-9338 • 이용시간 : 평일 09:00~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 홈페이지 : http://sonestop.khu.ac.kr/	• 위치 : 학생회관 2층 • 전화 : 031-201-2288 • FAX : 031-204-8123 • 이용시간 : 평일 09:00~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 홈페이지 : http://onestop.khu.ac.kr/index.ph

※ 증명서 발급

▷ 오프라인 : 업무시간 내 창구 내방 또는 설치된 증명서 자동 발급기 이용 (24시간 연중 무휴)

▷ 온라인 : 인터넷 증명발급센터 이용 (http://kyunghee.certpia.com/)

발급 가능 증명서 종류	수수료 (1통)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휴학증명서 • 재적증명서 • 수료증명서 • 제적증명서 • 학위수여(졸업) 증명서 • 학위수여 예정 증명서 • 교원자격증 발급 예정증명서	• 재학생 : 500원 • 영문증명 : 1,000원 • 졸업생(수료자) : 1,000원

※ 학생증 발급

① 신입생 신규 발급

- 학기 개시 전에 신청 및 발급, 신청 기간 및 방법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
- 내국인과 외국인의 신청방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지사항 확인

② 재학생 신규 발급

- 학기 개시 후 학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신청방법은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

③ 분실 등에 의한 재발급

- 학생지원센터에 방문 신청하며, 신청서(소정양식) 1부와 사진(3x4cm) 1매, 수수료 등 필요

④ 참고사항

- 학생증 발급 대기 중인 재학생은 신청 시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아 도서관 이용 가능

※ 기타 증명 및 추천서 발급

▷ 장학금(비)수혜 증명서

장학금 및 학비감면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학번, 이름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발급 가능

▷ 등록금(교육비)납입 증명서

연말정산이나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학번, 이름, 학기 등을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발급 가능

▷ 등록금(분납)고지서

발급고지서의 분실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면 발급 가능

※ 기타업무

▷ 학사정보 서비스 및 안내
인터넷 검색 전용 PC를 통하여 교내의 각종 정보(성적조회, 수강신청조회 등)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각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위치 등을 안내 받음

▷ 재학생 주소변경, 계좌등록은 Info21에서 본인이 직접 주소변경 가능

▷ 습득물, 분실물 접수 및 전달은 학생지원센터(제증명)의 유실물 보관함 이용

2. 예비군 연대본부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위치 : 네오르네상스관 (115호) 전화 : 02-961-0148 전자우편 : khse3120@khu.ac.kr 홈페이지 : http://healthsc.khu.ac.kr	위치 : 학생회관 2층 (219호) 전화 : 031-201-3265~9 전자우편 : khwe8340@khu.ac.kr 홈페이지 : http://web.khu.ac.kr/~yondae/

▶ 주요업무

① 예비군 자원관리

② 입학(사), 복학, 편입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편성 신고 접수

③ 학적 변동자(휴학(직), 제적, 자퇴, 사직, 미등록자)에 대한 전출 업무

④ 예비군 관련 제 증명서 발급 유관기관의 요청 또는 민원 제기 시 예비군 편성확인서 또는 교육 이수 확인서 등의 발급

⑤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 훈련 실시

⑥ 학교에 소속된 민방위 자원을 관리(전출·입)하고 유사시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기본/화생방/비상소집훈련)을 실시

⑦ 민방위 관련 제증명 발급

3. 건강센터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위치 : 경영대학(오비스홀) 152호 전화 : 02-961-0145 전자우편 : khsd3090@khu.ac.kr 홈페이지 : http://healthsc.khu.ac.kr 진료시간 : 평일 09:00 ~ 17:00	위치 : 우정원 1층 전화 : 031-201-3118~9 전자우편 : khwd8310@khu.ac.kr 홈페이지 : http://gaya.khu.ac.kr/health/ 진료시간 : 평일 09:00 ~ 17:00

▶ 주요업무

- 건강관리 : 각종 환자의 조기발견, 조기치료와 지도 및 진료 의뢰
- 건강상담 : 각 개인의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의 실시
- 결핵 및 성병관리 : 결핵 및 성병 등의 급. 만성 전염병 치료와 등록 관리
- 질병관리 : 급. 만성 전염병은 물론 일반질병 및 성인병 등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외래 진료
- 진료의뢰서발급 : 학생 및 교직원 본인에 한하여 경희의료원 진료의뢰서 발급업무
- 응급처치 : 응급환자의 구호와 가정 연락 및 의료원에 의뢰 및 관리

▶ 수진절차 : 신분증(학생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등록카드 작성 후 진료 및 상담 (진료비 무료)

4. 중앙도서관 * 도서관별 열람실/자료실 개관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전화 : 02-961-0074,75 Fax : 02-961-1582 전자우편 : khsd3013@khu.ac.kr 홈페이지 : http://khis.khu.ac.kr/	전화 : 031-201-3217,3222 Fax : 031-204-8111, 031-201-2657 전자우편 : khsd8202@khu.ac.kr 홈페이지 : http://library.khu.ac.kr/

▶ 도서관 서비스 및 이용

• 대출 도서의 연장 : 대출일 다음 날부터, 연장 기간은 신분별 대출일의 2분의 1

구 분	책 수	기간
학부생(재학생), 휴학생	10권	14일
대학원생(재학생), 휴학생	30권	30일
졸업생, 지역주민	5권	14일

□ 서울캠퍼스

• 도서관 개관 시간 (휴관일 : 일요일, 공휴일, 개교기념일, 도서관장이 필요하다 인정 시)

구 분		평 일	토 요 일	비 고
중앙자료실	중앙자료실	08:30 ~ 21:00	09:00 ~ 17:00	방학기간 평 일 : 09:00-17:30 토요일 : 휴관(공휴일포함)
	전자정보실	09:00 ~ 21:00	휴관	
	일반열람실	05:00 ~ 24:00 (연중무휴)		

• 법학 및 분관도서관 안내

실 명	위 치	서 비 스
법학도서관	법대 5, 6층	법학 전문도서 5만여권과 학술지 100여종 등을 비치 전자정보실, 개인열람실(캐럴), 공동연구실, 그룹 스터디실 등
한의학도서관	한의대 지하 1층	4만여권의 단행본과 120여종의 학술지를 소장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한의학 전문자료 비치, 제공
의학도서관	의학도서관 4층	의학, 약학, 간호학 등 의학분야 도서 4만5천여권, 학술지 220종의 자료 비치, 1백여석의 열람석, PC검색코너, 그룹스터디실

□ 국제캠퍼스

• 도서관 개관 시간

구 분		학기 중			방학 중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 · 공휴일
중앙도서관	자료열람실	09:00~21:00	09:00~15:00	휴관	09:00~17:30	휴관
	영상음향자료실	09:00~17:30	휴관	휴관	09:00~17:30	휴관
	정기간행물실	09:00~21:00	휴관	휴관	09:00~17:30	휴관
	일반열람실	06:00~24:00(학기중 제2열람실 24시간 개방)				
공학도서관		09:00~17:30	휴관	휴관	09:00~17:30	휴관
후마니타스도서관		09:00~20:00	휴관	휴관	09:00~17:30	휴관

* 제1, 4 열람실은 시험기간 1주일 전부터 24시간 개방 (학기 중 제2열람실 24시간 개방)

5. 교원임용고사반

-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학부 및 교육대학원생을 입실원으로 선발하여, 교원 임용시험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위치 : 네오르네상스관 106호 운영시간 : 월~토 08:00 ~ 23:00 지도교수 : 조영하 담당직원 : 박미라	위치 : 멀티미디어교육관 501호 운영시간 : 매일 08:00 ~ 23:00 지도교수 : 최일선 담당직원 : 안유정

▷ 지원대상 : 교육대학원 재학 및 졸업생 (세부 기준 별도 공고 안내문 참조)

▷ 입실원 모집 시기 : 연 1회(매년 2월)

▷ 지원사항 : 열람실 이용 (월 170시간 이상 출석)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공통) 열람실 이용 : 월 170시간 이상 출석(평상시) / 월 150시간 이상 출석(코로나19 상황 시)	
• 복사비 지원 : 월 2만원 (네오르네상스관 1층 복사실에서만 사용 가능) • 도서지원 : 열람실 비치 도서 대출 및 희망 비치 도서 신청 • 임용관련 수강비 지원 : 10만원/학기 • 스터디룸 대여 지원 • 임용고시 합격 졸업생 특강 진행	• 프린터기 지원 • 도서지원 : 열람실 비치 도서 대출 및 희망 비치 도서 신청 • 임용관련 수강비 지원 : 30만원/년 • 스터디룸 대여 지원 • 임용고시 합격 졸업생 특강 진행

6. 교내 공용소프트웨어 사용 방법 안내

▶ 경희대학교 정보처 홈페이지 접속 후 공용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
http://ois.khu.ac.kr/login.do?redir=/service/service_03.do
※ 아이디/password : 인포21과 동일함

① 교육, 연구, 행정을 목적으로 교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공용소프트웨어를 정보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가능

7. 기타 안내

▶ 건물 출입 방법 안내

① 학생증 발급 후 행정실 방문을 통해 '출입통제카드 등록신청서' 작성 및 수령

② 수령한 신청서와 학생증을 지참하여 CAPS 사무실(경영대학 지하 3층) 방문 후 출입카드 등록

③ 건물 입구 인증기기에 학생증으로 인증 후 출입 가능(교내 전 건물 출입 가능)

④ 학생증 발급 전 : 인증기기의 호출 버튼을 눌러 본인 확인 후 출입 가능

▶ 주차요금 할인

구 분	주차요금	비고
일반 주차요금	최초 30분 2,000원 / 초과시 10분 당 500원	출차 시 학생증 제시 할인 불가
정기주차권 구입	130,000원/학기	학기 초 주차관리실 방문 등록
주차할인권 구입	4,000원/6시간/일	수업이 있는 요일에 한하여 할인 적용 한 학기에 최대 50매까지 사전 구매 가능 (학생증 및 재학증명서 지참 요)

※ 관련문의 : 주차관리실 서울(푸른솔문화관 지하2층) 02) 961-0181, 국제 031) 201-3773

▶ 정기권 신청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주차관리소 구비)

나. 차량등록증 사본 1부(기 등록차량은 제외)

- 차량등록증 원본 지참,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 관계증명 서류 일체
  예) 직계가족 차량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리스차량일 경우 리스계약서 등

다. 증빙서류 : 재학증명서 또는 수강증명서 1부

8.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 소개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입니다.

본 원우회는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분들의 학업 지원,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대학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우 여러분께 좀 더 빠르게 소식을 전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학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원우회와 함께 힘차고 즐거운 대학원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원우분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항상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캠퍼스]

- 원우회실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청운관 617호
- 원우회실 전화 : 02) 961-0137
- 네이버 카페 주소 : http://cafe.naver.com/educationkyunghee
- 카카오 채널 : "경희대교육대학원원우회(서울)" 검색
  http://pf.kakao.com/_xheseK (QR코드(오른쪽) 검색 후 채널추가 가능)

[국제캠퍼스]
- 원우회실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멀티미디어교육관 605-1호
- 원우회실 전화 : 031) 201-2258
- 카카오 채널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국제)" 검색
  http://pf.kakao.com/_xfgTxexj (QR코드(오른쪽) 검색 후 채널추가 가능)

▶ 원우회 임원 소개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직책	제 72대 임원	직책	제 21대 임원
회 장	박병규(음악교육 5기)	회 장	윤희선(유아교육 3기)
부 회 장	허지수(유아교육 5기)	부 회 장	김현지(유아교육 4기)
정보부장	심화정(유아교육 4기)	총무부장	어지희(중국어교육 4기)
자치부장	배소연(미술교육 3기)		
기획부장	김소현(음악교육 3기)	기획부장	고은수(체육교육 4기)

▶ 원우회 이용 안내

1) 원우회실 이용 시간

구분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이용기간	개강일부터 종강일까지	
이용시간	월 / 목 14:00 ~ 18:10	월 / 목 17:00 ~ 19:00

※ 이용시간 변경 시 원우회 홍보채널을 통해 공지 예정

2) 원우회비 납부
: 미납부자의 경우 언제든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함. 납부 후 꼭 문의 및 확인 바람
: 최초 납부 8만원 / 이후 매 학기당 3만원
[서울캠퍼스 계좌번호 : 3333255371951 (카카오뱅크 박병규)]
[국제캠퍼스 계좌번호 : 110555429409 (신한은행 어지희)]

3) 원우회실 운영사항
① A4용지, 프린트 및 제본
- A4용지 & 프린터 : 1일 최대 100매 / 한 학기 최대 1,500매 (5기는 하루 200매)
- 링·코일 제본 : 1일 최대 2권 / 한 학기 최대 10권 (5기는 하루 3권)

② 간식 배부 ※ 네이버 카페 공지사항 참조
[서울캠퍼스]
- 매 학기 중간·기말고사 총 2회 예정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 게시판, 카카오톡, 네이버 카페에 추후 공지
- 간식은 사전 신청제이며. 배부 2주 전 카페 및 카카오채널 신청 및 공지

[국제캠퍼스]

- 매달 격주로 진행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 카카오톡 채널, 전공대표를 통해 추후 공지
- 간식은 예약제이며. 배부 5일 ~ 3일 전까지 예약 신청받음

③ 임용고시 소모임 지원

- 간식 지원

④ 학우들을 위한 심리 및 정서적 지원

- 감정 코칭 전문가 특강 개최

⑤ 핸드폰 충전기 / 우천 시 우산 대여

- 핸드폰 충전기 당일 반납, 우산 1주간 대여 가능
- 연체 시, 1일 100원의 연체료 부과. (연체일은 원우회실 운영일 기준)

⑥ 간식 / 음료 / 구급약품 구비 / 여성용품 지원

- 필요 시 원우회실 방문 후 원우회 임원에게 요청

⑦ 사물함 신청

- 매 학기 개강일 ~ 한 학기에 한함
- 평일 09:00 ~ 22:00까지 사용가능
- 한 학기 이용료 3000원

⑧ 교육대학원 굿즈 제작 예정 ※ 추후 전공별 단톡방 공지 사항 참조

- 그립톡, 볼펜 등

⑨ 교육대학원 학우들만의 체육대회 개최 예정 ※ 추후 전공별 단톡방 공지 사항 참조

- 팀별 운동 경기, 레크레이션, 장기자랑 등

⑩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인스타그램을 통한 소통 및 홍보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제캠퍼스 인스타 주소 : http://instagram.com/khu_21_wwa

※ 원우회 이용 안내 사항은 캠퍼스별로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캠퍼스 원우회실로 문의 바랍니다.

※ 기타 문의 및 건의 사항은 원우회 카카오 채널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 교내 안내도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시행일 : 2022. 9.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및「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목적) 본 대학원은「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급속히 발전하는 학문과 교육환경을 수용 선도할 수 있는 이론과 방법론을 교수하여 유능한 교육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교육발전을 통한 문화세계의 창조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과정) 본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석사과정을 두고, 비학위과정으로 석사연구과정과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제4조(학과 및 입학정원) ① 본 대학원에 개설된 과정의 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별과정은 학위과정 전공과 유관된 분야에서 전공을 개설할 수 있으며 전공별 심화과정을 둘 수 있다.

제2장 입학

제5조(입학자격) ①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소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본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 전항의 입학자격을 갖춘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부전공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교원자격검정령」및「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연구과정 입학자격은 석사과정에 준한다.
④ 특별과정 입학자격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원전공분야) ①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양성과정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자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교원자격검정관련 법령에 명시된 학부의 관련학과 또는 전공 및 본 대학원의 전공과 일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양성과정 부전공 지원 시 지원자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과 본 대학원의 전공이 일치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입학전형방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② 일반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선발하고, 필요 시 전공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선발한다.
③ 일반전형 지원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세부적인 가산점 부여 기준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1.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교직과목을 이수한 경우
3. 학부 성적이 우수한 경우

4. 기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결정한 사항

④ 본 대학원장은 전형 결과에 대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8조(특별전형 지원자격)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규직이면서 현직으로 근무하는 자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의 교원
2.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및 재단에 근무하는 자
3. 교육부, 교육청, 국가지자체 등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자
4. 국·공립의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5. 기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지원서류)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
4. 기타 입학전형에 필요한 서류

제10조(합격통지서 발급) 본 대학원장은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합격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입학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합격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1.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본 대학원 입학 전에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3.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제3장 등록

제13조(입학금 및 등록금) ① 입학금 및 등록금은 본 대학원장이 발급한 등록고지서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제14조(추가등록) ① 소정의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한 자는 추가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수업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거나, 수업연한 이후 논문대체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금은 다음과 같다. 등록금 산정을 위한 수강학점에는 선수과목 학점을 포함한다.
1. 1~3학점 : 등록금 반액
2. 4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제15조(등록횟수) 본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석사과정 5기 이상, 석사연구과정은 2기 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휴학 및 등록금) ① 휴학은 등록을 마친 학생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등록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까지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군입대 휴학자로서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 납부된 등록금을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별표 2]의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④ 군입대를 위하여 미리 휴학할 경우에는 우선 일반휴학원을 제출한 후, 입영 14일 전까지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⑤ 휴학기간은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다음의 사유로 증빙을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휴학할 수 있다.
1. 병역의무의 이행
2. 임신, 출산(최대 2학기)
3. 해외파견 또는 전근(최대 3년, 단, 전근은 통학이 불가능한 원격지인 경우에 한함)
4. 질병 치료(최대 2학기, 2차 이상 의료기관 발행 4주 이상 진단서 필요)
5.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교육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4장 수강신청 및 수업

제17조(수업연한)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 6개월, 석사연구과정 1년, 특별과정 6개월에서 1년으로 한다.

제18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수강신청 정정)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신청을 정정할 경우에는 개강 후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을 정정하도록 한다.

제20조(수업방법)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수업형태) 수업형태는 강의 외에 세미나, 실습, 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수업진행) ① 본 대학원의 수업은 각 전공별로 기수와 학생구성(현직교사와 비교사)을 고려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강인원이 적어 정상적인 수업운영이 곤란한 경우 합반을 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장은 학기말 이전에 다음 학기 개설예정 교과목을 전공주임교수의 의견을 들어 개설하며, 수강 신청 이후에 신청자가 과도할 경우에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 개설

이나 분반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합동강의) 영어특강 및 본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특별과목은 수강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의 구분 없이 합동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출석일수) ① 출석일수가 전체의 3분의 2에 미달된 자는 해당과목 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
② 공무 출장으로 인한 결석은 소속 기관장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출석인정원을 제출한 경우, 3회에 한하여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병·의원장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출석인정원을 제출한 경우, 3주 이내에 한하여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5조(학업평가) ① 학업평가는 출석, 과제물, 시험, 발표(세미나 등),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과목에 대한 시험은 매 학기말에 실시하며 중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업성취의 등급별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등급	평점	백분위 환산점수
A+	4.3	93~100
A	4.0	90~92
A-	3.7	87~89
B+	3.3	83~86
B	3.0	80~82
B-	2.7	77~79
C+	2.3	73~76
C	2.0	70~72
C-	1.7	67~69
F	0	66점 이하
P	-	
N	-	

제26조(교과목 담당교원) ① 본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4. 기타 사계의 권위자로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

② 교과운영 상의 목적에 따라 신임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강의계획서) ① 다음 학기 개설될 과목의 강의계획서는 수강신청 기간 전에 학생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본 대학원에 비치되지 않은 교육용 보조도구나 실험실습기자재가 필요한 경우, 교과목 담당교원은 강의계획서 제출 시 이를 본 대학원에 요청하여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설강기준) 강좌개설은 수강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에 개설할 수 있다. 단, 5인 미만인 강좌 중 부득이 개설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전공주임교수의 제청으로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의 승인 후 개설할 수 있다.

제5장 영어강좌

제29조(영어강좌 개설) ① 전공주임교수는 해당 전공의 교과목 중 영어로 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영어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영어강좌는 본교 전임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있다.
③ 영어강좌는 해당 전공 교과목으로 개설된 과목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제30조(영어강좌 개설절차) 영어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영어강좌 개설신청서
2. 영문 강의계획서
3. 기타 본 대학원장이 요구하는 서류

제31조(수업보조금 지원) ① 영어강좌를 담당하는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항의 수업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소지자가 담당하는 강좌
2. 외국어 회화 및 청취 관련과목 강좌
3. 실험·실습·실기강좌(강좌가 이론과 실험실습, 이론과 실기로 구성된 경우에는 이론에 대해서만 지원함)

③ 수업보조금의 금액, 지원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2조(개설신청 기한) 영어강좌 개설신청은 1학기 강좌는 전년도 11월말까지, 2학기 강좌는 해당년도 5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제33조(결과보고) ① 영어강좌를 담당한 교원은 해당학기 강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교원은 향후 1년간 영어강좌를 담당할 수 없다.

제6장 학점 및 수료

제34조(학점취득) ① 1학기에 15시간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며, 이수교과목의 단위는 2학점으로 한다. 단, 평생교육전공은 교과목에 따라 이수과목의 단위를 3학점으로 할 수 있다.
② 학생이 한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1. 교과교육과목 수강학기에는 7학점까지 취득 가능
2. 5기 수료요건 미충족 시 2학점 추가 취득 가능
3. 상담심리전공, 외국어로서의한국어전공은 3~4학기 각 2학점 추가 취득 가능
4. 평생교육전공은 학기당 8학점까지 취득 가능

③ 특별과정의 이수학점은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선수과목)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 외에 교사자격증 취득 또는 특정목적을 위해 전공 또는 교직과목을 대학원 또는 학부에서 선수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② 선수과목은 학기당 6학점 이내, 재학기간 중 총 2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단, 학기 수강

학점은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졸업학점 및 종합시험 응시자격학점 산출 시 포함하지 않는다.

제36조(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등) 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4기 내에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하며, 실습기간은 해당 학년도 1학기 중 연속하여 4주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이수할 수 있다.
② 교육봉사활동은 다음의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재외국민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평생교육 시설(성인대상교육시설 제외)
4.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5. 본 대학원과 교육봉사활동 협약을 맺은 기관
6. 기타 교육봉사활동계획서(소정양식)를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이 승인한 기관
③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하고자 하는 본 대학원생은 사전에 교육봉사계획서를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
④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봉사활동기관에서 발급한 봉사활동결과보고서(소정양식) 및 봉사활동일지를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60시간 이상 활동한 경우 2학점 급제(Pass)로 인정된다.
⑤ 전공의 특성에 따라 교원자격증 외의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형태의 실습을 수업연한 중에 이수하여야 한다.

제37조(학점인정) ① 정규 교과목 이외에 본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점수와 평점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급제와 낙제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급제는 P등급, 낙제는 N등급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P등급은 해당 과목 학점이수로 인정한다.
② 급제/낙제 과목의 학점은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낙제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한 경우 최종 이수 성적을 반영한다.
④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전공심사와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38조(타 기관 수강 인정) ① 복학을 한 자가 복학 전 이수한 과목과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6학점까지 교내 타 대학원 또는 학부에서 관련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② 폐지된 전공 소속 학생으로 이수가능한 전공과목이 없는 경우, 본 대학원장은 다른 전공 또는 교내 타 대학원과 학부에서 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수료 및 졸업) ① 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수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1. 제17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한 자
2. 전공과목 8과목(16학점) 이상, 교직과목 4과목(8학점)을 포함하여 최저 24학점을 취득한 자(단, 평생교육전공은 교직과목을 전공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 가능)
3.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80점 이상인 자
4. 양성과정 이수자로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조건을 충족한 자
③ "졸업"이라 함은 전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종합시험, 논문학점(6학점) 또는 논문대체과목(6학점)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7장 종합시험

제40조(종합시험) 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은 전공시험과 교직시험으로 한다.
③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1. 4기 이상 정규등록을 마친 자
2. 본 대학원에서 이수(예정 포함)한 학점이 18학점(전공 12학점, 교직 6학점) 이상인 자
3.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④ 제55조에 따라 논문대체를 하고자 하는 자가 위 3항의 자격을 갖춘 경우, 논문대체수업 중 또는 논문대체수업이수 이후에도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41조(시험시기와 신청) ① 종합시험은 4월과 10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종합시험은 전공과목과 교직과목 중에서 각 2과목씩, 총 4과목으로 실시한다.

제42조(종합시험 합격기준) ① 종합시험 합격기준은 전공시험과 교직시험 각 2과목을 모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기준은 80점(100점 만점) 이상으로 한다.
② 종합시험은 각 과목별로 합격을 인정한다.

제43조(재응시)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차기 종합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다.

제8장 학위논문

제44조(학위논문 제출 자격)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5기 이상 정규 등록을 마친 자
2.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예정 포함)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2기에 논문예비계획서 제출, 3기에 논문지도결과보고서 제출, 4기에 논문공개발표 합격한 자

제45조(학위지도교수의 자격) ① 학위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는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의 비전임교원, 타 대학 전임교수 또는 기타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경력자로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 및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③ 학제간 지도교수가 필요하여 전공주임교수가 건의하고 본 대학원장이 승인한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④ 교과교육학 관련 논문을 작성하여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하고 본 대학원장이 승인한 경우, 교육 현장의 석사학위 이상 전문가를 공동 지도교수로 둘 수 있다.

제46조(지도교수의 배정) ① 제2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지도교수를 명시한 석사학위논문 예비계획서를 개강 후 30일 이내에 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② 전공주임교수는 논문예비계획서의 내용과 희망 지도교수의 전공을 고려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③ 지도교수는 동일 기수의 학생 4인 이상을 동시에 지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나 지도교수가 불허할 경우 또는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을 더 이상 지

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첨부하여 지도교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논문지도) ①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생은 논문 제출학기를 포함하여 총 3학기 동안 논문지도를 받고 합격하여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학기말에 논문지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성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논문공개발표)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동의하에 전공주임교수에게 논문공개발표 계획서를 제출하고, 논문 제출 1학기 전에 각 전공별로 공개발표를 해야 한다.
② 논문공개발표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논문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③ 논문공개발표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공개발표를 다시 하여야 하고, 재발표에서도 불합격 판정을 받을 시에는 다음 학기에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
④ 5기 이후에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는 해당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논문구비사항) 논문의 구비사항, 규격, 양식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50조(심사위원) 학위논문의 심사는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하고 본 대학원장이 승인한 3인의 심사위원이 담당한다.

제51조(논문심사 주심) ① 본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주심으로 선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할 수 있다.
② 주심은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③ 지도교수는 해당논문심사의 주심이 될 수 없다.

제52조(논문심사 합격기준) 학위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찬성과 심사위원 전원의 점수 평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53조(심사용 논문) ① 학위논문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기일 내에 지도교수의 승인 날인을 받은 심사용 논문 3부를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논문제출)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1. 중앙도서관 학위논문제출 확인서를 본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2. 중앙도서관에 보관용(하드커버) 논문 3부 제출
3. 국문·영문 초록이 포함된 논문 파일을 도서관 논문전용데이터베이스에 수록

제55조(논문대체) ① 제4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가 논문을 대신하여 6학점 이상의 논문대체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경우 이를 논문 제출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 논문대체학점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논문대체과목의 성적이 모두 B학점(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논문대체과목 중 B학점(80점)미만인 과목이 있을 경우 해당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단, 해당과목이 미개설된 경우 다른 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④ 학교현장실습,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한국어교육참관 및 실습, 평생교육실습 등 교육실습관련 과목은 논문대체과목으로 신청할 수 없다.

제56조(학위수여) ① 본 대학원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논문심사에 합격하거나 논문대체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발급한 학위기는 졸업일 기준 1년까지 보관하며 경과 시 폐기한다.

제57조(교원자격증 취득) ① 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한다.
② 발급한 교원자격증은 졸업일 기준 1년까지 보관하며 경과 시 폐기한다.

제9장 장학금 및 연구비 보조

제58조(장학금 및 연구비)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운영 및 지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③ 교직장학, 경희가족장학, 보건장학 및 지역교육장려장학의 경우 매 학기 해당 기간 내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연구계획서 또는 학업계획서 등 학습목표 및 성과 등을 명확히 첨부하여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 약간 명을 선발하여 학업장려장학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기타 기부 등에 의한 장학금은 본 대학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처리한다.
⑥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는 당해학기 장학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장 우수논문상

제59조(수여목적) 학생들의 연구분위기 진작과 졸업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논문상 수여제도를 둔다.

제60조(선정절차) 우수논문선정은 교육현장의 개선과 활용에 중점을 둔 것으로 각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본 대학원장이 선정한다.

제61조(시상방법) 우수논문 수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졸업 시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1장 직제 및 연구기관

제62조(직제)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전공주임교수 및 행정실을 둔다.
제63조(전공주임교수) ①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전공별로 각 1인의 전공주임교수를 둔다.
② 전공주임교수는 전공강의와 학생지도 및 해당 전공의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64조(학사운영위원회) ①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학사운영위원회는 본 대학원장, 부대학원장의 당연직 위원과 본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본 대학원장은 학사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학사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학사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5조(학사운영위원회의 기능) 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전공의 설치·폐지 및 그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4.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지급 및 보조에 관한 사항
6. 본 대학원 내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캠퍼스별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66조(부속기관) ① 본 대학원에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의 운영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12장 보칙

제67조(보칙)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되,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5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7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본 내규의 제44조(종합시험의 면제)는 2009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35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이전입학생의 경우 선수과목은 전공선수과목과 교직선수과목에 대하여 학기당 3학점이내, 재학기간 중 총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부칙

본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60조 제4항 별표2 경희가족장학 제3호의 규정은 2010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44조 제1항의 면제기준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내규 시행일 이전 수료자가 제58조 규정에 의한 논문대체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이수하고자 하는 당해 학기에 본인의 수료한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제14조 제2항에 의한 추가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6조와 제61조 별표3의 목련장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제41조와 제42조, 제45조는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이후 졸업자에게는 제41조, 제42조, 제45조를 적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40조(종합시험) 제4항, 제55조(논문대체) 제1항, 제56조(학위수여) 제1항은 본 내규 시행일 현재 재학생 및 수료생에게 적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정별 전공 및 정원

과정	과정명	전공	정원	기간	운영방법
학위 과정	석사과정	교육정책 및 리더십,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유아교육, 일반사회교육, 역사교육, 국어교육, 영어교육, 중국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수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보건교육, 상업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디자인교육, 체육교육, 상담심리, 박물관·미술관교육, 영양교육, 교사리더십, 평생교육, 실용음악교육, 혁신교육	334명	2년6개월	학기제
비학위 과정	석사 연구과정	석사과정에 준함	약간명	1년	학기제
	특별과정	석사과정과 유관된 분야의 전공 및 전공별 심화과정	000명	6개월~1년	학기제

[별표 2] 등록금의 반환기준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3. 등록금 반환 발생일은 재학생의 경우에는 신청일, 휴학생의 경우에는 휴학기간 중 최초 휴학신청일 기준으로 하며 상기 2호에서 정한 [반환사유 발생일]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평일을 해당기간의 말일로 한다.
4. 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 학력사항 또는 입학관련 서류의 위·변조 등으로 입학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금(입학금 포함)은 반환하지 않는다.

[별표 3] 장학금 운영 및 지급기준

장학금 종 류	적용 구분	지급액(%)	지급기간	지 급 대 상	이중 수혜 여부
총장장학	석사/ 비학위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또는 일부	재학기간	본 대학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총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불가
교직장학	석사	등록금의 30%	재학기간	현직교사(기간제, 임시교사제외) 교육공무원(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유아교육전공의 경우 유치원교사(정규직)	불가
공무원 장학	석사	등록금의 30%	재학기간	평생교육전공의 현직 공무원(정규직)	불가
보건장학	석사	등록금의 30%	재학기간	보건교육전공의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500병상이상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정규직)	불가
경희가족 장학	석사/ 비학위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재학기간	학교법인 경희학원, 경희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 교.직원 : 2년 이상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불가
		등록금의 50%	재학기간	1. 의료기관 및 병설학교 교.직원 : 제 1호를 준용하여 지급하되 석사과정 및 특별과정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2년 이상 재직 중인 본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에 한하여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불가
모범장학	석사	등록금 전액	해당학기	원우회장 및 원우회부회장	불가
		등록금의 일부	해당학기	원우회임원 약간 명	가능
	비학위	등록금의 일부	해당학기	비학위과정 원우회장, 원우회 부회장, 원우회 임원, 전공대표	가능
우수장학	석사	학기당 100만원	해당학기	1. 성적우수자 2. 전공발전을 위하여 공헌을 한 자로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가능
경희동문 장학	석사/ 비학위	등록금의 13%	재학기간	본교 동문 (대학, 대학원)	가능
학업장려 장학	석사	학기당 50만원	해당학기	본인이 장학금 수혜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자기추천을 한 학생 중 약간명	가능
목련장학	석사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해당학기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및 가계곤란자 2. 기타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가능
추천장학	석사/ 비학위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해당학기	성적, 사회봉사활동, 애교심 등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된 자 중 본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능
지역교육 장려장학	석사	학기당 50만원	재학기간	본 대학원 국제캠퍼스 재학생 중 1~5기 원생으로 경기 남부지역(경기1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 현직교사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가능
조교장학	석사	등록금의 일부	재학기간	학사조교 및 연구조교로 소속부서의 발령을 받은 자	가능

1) 장학금 지급 시 입학금은 제외한다. (단, 별도로 명시된 경우 입학금 포함)

2) 장학금 지급은 수학연한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3) 장학금 금액은 등록금 범위내로 한다. 단, 모범장학(전공대표)은 예외로 한다.

4) 상기에 표기되지 아니한 장학금의 세부 지급기준은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 : 2023. 3.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경희대학교 학칙」제4조에 의거하여,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한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원의 종류) 본교에는 다음 각 호의 대학원을 둔다.

1. 일반대학원
2. 전문대학원 : 동서의학대학원, 국제대학원, 체육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이하 "의학대학원'이라 한다),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의학대학원"이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이하 "법학대학원"이라 한다)
3. 특수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공공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법무대학원, 관광대학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간호대학원

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각 과정 안에 연구기관, 산업체 및 정부기관과의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학과간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전문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복합학위과정 포함), 학·연·산 협동과정 및 학과간협동과정을 둘 수 있으며, 국제대학원에는 연계과정을, 동서의학대학원에는 통합과정을, 법학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③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④ 각 대학원에는 학위과정 이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를 둘 수 있으며, 계약학과에 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과정(복합학위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① 일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2]와 같다.
③ 특수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총 정원제로 하며,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별표3]과 같다. 특수대학원별 입학정원은 총 정원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입학

제5조(입학전형 횟수 및 시기) ① 각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3월 1일, 9월 1일)로 하며 입학전형은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실시하는 정시전형, 정시전형 이후 결원에 대해 수시로 선발하는 수시전형 및 입학 6개월 이전에 학생을 선발하는 조기전형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학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도 개시일로 하며 입학전형의 실시횟수 및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입학지원 자격) ① 각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에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의 경우 현직 교원에 한하여, 법학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당해 연도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 박사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각 대학원 입학 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제7조(입학지원절차)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지원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입학전형방법) ①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 방법은 필기시험 또는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에 의한 일반전형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특별전형으로 한다. 다만, 학과나 전공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학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모집 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③ 법학대학원의 입학전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입학허가)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9조의2(입학허가의 취소)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입학전공분야)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는 하위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연계과정의 경우 석사과정의 전공은 학사과정의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중 하나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11조(교직원 입학제한) ① 본교 전임 교직원은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

②「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제37조 제10항에서 규정한 조교,「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별표3] 및 [별표4]의 의료직(전공의)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별표2]의 행정직원 중 재직기간 2년 이상인 직원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일반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학생) 각 대학원은 기업체 등 외부 관련 기관의 위탁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정원외 입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

학 할 경우에는 그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14조(재입학.편입학 및 전과) ① 총장은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범위 안에서 재입학.편입학 및 각 대학원간의 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에의 편입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각 대학원장은 학과 또는 전공의 통폐합 등 필요할 경우 해당 대학원내에서 학생의 전과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③ 전문대학원간 또는 특수대학원간에 학과 또는 전공의 통폐합이 있을 경우 폐지된 학과 또는 전공의 재적생은 입학한 대학원의 학적을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적생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총장은 통합되는 대학원의 해당학과 또는 전공으로 이적을 허가할 수 있다.
④ 폐지되는 학과 또는 전공의 재적생이 해당 대학원 내의 학과 또는 전공으로 이적하는 경우 당해 학생이 그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거하여 타 대학원으로 이적할 경우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전부를 이적한 대학원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5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3장 학적변동

제16조(휴학) 휴학은 일반휴학과 특별휴학으로 구분하며 학생은 각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 할 수 있다.
② 일반휴학은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은 모두 합하여 아래의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구분	대학원명	석사과정	통합과정	박사과정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4개학기	6개학기	4개학기
전문대학원	동서의학대학원	2개학기	4개학기	2개학기
	국제대학원	2개학기	-	2개학기
	체육대학원	4개학기	-	4개학기
	의학대학원	6개학기	-	6개학기
	치의학대학원	8개학기	-	8개학기
	법학대학원	4개학기	-	4개학기
특수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2개학기	-	-
	평화복지대학원을 제외한 특수대학원	4개학기	-	-

③ 병역의무 이행, 출산으로 인한 휴학 등 특별휴학 기간은 제2항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휴학의 종류, 사유, 기간 등 특별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제17조(복학) 휴학을 한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되 그 시기는 소속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내로 한다.

제18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각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자퇴할 수 있다.

제19조(제적) ① 총장은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제적할 수 있다. 다만, 각 대학원 내규에서 유급, 성적경고, 타교입학, 재학연한 초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의 제적사유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 또는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② 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통합과정에서 제적한다.
③ 국제대학원과 평화복지대학원의 경우 2개학기 연속 평균평점 B-(2.7)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제적한다.

제4장 수업연한.교과과정.학점.성적 및 수료

제20조(수업연한) ①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구분	대학원명	석사과정	통합과정	박사과정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2년	4년	2년
전문대학원	동서의학대학원	2년	4년	2년
	국제대학원	2년	-	2년
	체육대학원	2년	-	2년
	의학대학원 - 박사학위과정(복합학위과정)	4년	-	7년
	치의학대학원 - 박사학위과정(복합학위과정)	4년	-	7년
	법학대학원	3년	-	2년
특수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	2년	-	-
	평화복지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을 제외한 특수대학원	2년 6개월	-	-

② 일반대학원과 국제대학원의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한다.
③ 동서의학대학원, 국제대학원, 경영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법무대학원, 관광대학원, 공공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국제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각 내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④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 대상 MBA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수업연한은 1년 6개월로 한다. 과정운영의 세부내용은 「테크노경영대학원내규」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⑤ 일반대학원의 경우 학부 졸업 6개월 이전에 대학원 입학을 허가 받아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입학한 자(이하 "예약입학자"라 한다) 및 학부 졸업 1년 이전에 대학원 입학을 허가 받아 학석사연계(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에 입학한 자는 6개월 이내, 통합과정에 입학한 자는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⑥ 국제대학원의 경우 연계과정에 입학한 자는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⑦ 경영대학원에서 패스트트랙 MBA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패스트트랙 MBA과정으로 입학한 자는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단, 과정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은「경영대학원 내규」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⑧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각 내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 할 수 있다.

제21조(학기) 각 대학원의 학기는 매학년도 2개 학기 내지 4개 학기로 한다. 다만,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은 2개 학기로 한다.

제22조(교육과정) ① 각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해당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 각 대학원장은 협의를 통하여 교과목을 공동 개설할 수 있다.
③ 법학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법학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④ 외국대학(원)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학위과정의 수료인정) ①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각각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다만, 일반대학원의 경우 선수학점은 수료를 위하여 취득하여야 하나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통합과정에서 2년 이상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고, 4년 이상 등록하고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③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일반대학원 통합과정의 석사학위과정으로 수료를 원하는 경우 3기 이후 전환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료 시 총 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2. 경영대학원은 30학점
3. 국제대학원은 45학점(단, 국제통상협력학과 한국개발경험 및 경제협력 전공, 산업 및 무역정책 전공은 42학점, 국제개발협력학과 국제개발컨설팅 전공은 36학점, 환경・지속가능개발 전공은 42학점, 국제경영학과 국제농식품경영전공, 국제인적자원경영전공은 36학점)
4. 평화복지대학원은 24학점
5. 공공대학원은 32학점
6.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은 160학점
7. 법학대학원은 96학점
8. 법무대학원은 28학점
9. 간호대학원은 30학점(단, 노인전문간호사전공은 42학점, 정신전문간호사전공은 41학점)
10. 관광대학원은 30학점

④ 각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36학점으로 하고 통합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60학점으로 한다. 다만, 국제대학원의 경우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12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⑤ 일반대학원의 경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인정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의한다.
⑥ 수료 및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과목 평점평균은 B-(2.7)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각 대학원 내규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⑦ 외국대학(원)과의 협약을 통한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과정의 경우, 협약을 통해 수료에 필요한 기간과 학점을 추가할 수 있다.
⑧ 각 과정별로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⑨ 외국대학(원)과의 협약을 통해 공동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각 학위과정의 매 학기 취득학점은 논문지도학점 및 선수학점을 제외하고 석사과정 9학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12학점까지 취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학기당 취득학점을 달리 할 수 있다.
1. 일반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12학점
2. 일반대학원 예약입학자 12학점, 학석사연계과정 12학점
3. 동서의학대학원 의학영양학과 18학점
4.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 25학점
5. 평화복지대학원 9학점
6. 체육대학원 12학점
7. 법학대학원 석사과정 20학점, 박사과정 9학점
8. 국제대학원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석사과정 학생의 직전학기 평점이 4.0 이상이거나 학과장이 승인한 경우 18학점
   나. 연계과정으로 입학한 경우에는 15학점
   다. 국제통상협력학과 석사과정 한국개발경험 및 경제협력 전공, 산업 및 무역정책 전공, 국제개발협력학과 석사과정 환경·지속가능개발 전공은 평점에 관계없이 18학점
9. 테크노경영대학원 9학점(논문학점 제외)
10. 경영대학원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패스트트랙(3학기) 입학자 : 12학점
   나. 패스트트랙(4학기) 입학자 : 10학점
   다. 일반석사과정 : 8학점
11. 간호대학원 7학점(단, 노인전문간호사전공과 정신전문간호사전공은 12학점)
12. 그 외 특수대학원 8학점
13. 석사학위과정 수료학점이 24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12학점
③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과정의 학생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5조(선수학점) ① 각 대학원은 제23조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하여 추가로 선수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1. 일반대학원 : 하위 학위과정의 학과(전공)과 상이한 학과(전공)에 입학 한 자
2. 전문대학원 : 하위 학위과정의 전공과 상이한 전공으로 입학한 자 또는 특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입학 한 자
② 선수학점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교과목의 연계) ① 본교 학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사학위과정의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가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6학점까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의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6학점까지 석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 전에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 중 1인과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학대학원의 경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법학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15학점까지 법학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국제대학원의 경우 학사학위 과정 중 이수한 국제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12

학점까지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학점교류 학점의 인정)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이 본교 내외의 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박사학위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내, 통합과정은 18학점 이내에서 제23조에 규정한 수료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외국대학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수료학점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고, 법학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 다른 법학대학원 또는 법학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15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라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③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가 각 학위과정의 동일 학과 및 전공에 재입학 하였을 때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받을 수 있다.

제28조(학업평가) ① 학업성취의 평가는 등급으로 하며 각 등급별로 백분위 점수를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다만, 법학대학원, 의학대학원은 별도로 정한다.

[치의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공공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을 제외한 각 대학원]

등급	평점	점수
A+	4.3	100
A0	4.0	96
A-	3.7	93
B+	3.3	89
B0	3.0	86
B-	2.7	83
C+	2.3	79
C0	2.0	76
C-	1.7	73
D+	1.3	69
D0	1.0	66
D-	0.7	63
F	0	0
P(급제)	-	-
N(낙제)	-	-

[치의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공공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

등 급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공공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테크노경영대학원	치의학대학원	평점
	점수		
A+	93~100	93~100	4.3
A	90~92	90~92	4.0
A-	87~89	87~89	3.7
B+	83~86	83~86	3.3
B	80~82	80~82	3.0
B-	77~79	77~79	2.7
C+	73~76	73~76	2.3
C	70~72	70~72	2.0
C-	67~69	67~69	1.7
D+	-	63~66	1.3
D	-	60~62	1.0
D-	-	57~59	0.7
F	66점 이하	56점 이하	0
P(급제)			
N(낙제)			

※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은 [(교과목별평점×학점)의 총합]]÷수강신청 총학점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하며 그 이하는 절사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과목에 대하여는 점수와 평점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급제와 낙제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제는 P등급, 낙제는 N등급으로 표시하되, 교과목에 따라 급제만을 표기할 수 있으며, 성적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③ 성적의 D-등급 이상과 P를 급제로 하고 F등급과 N등급을 낙제로 한다.

제29조(학점인정) ①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일의 2/3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의 학점인정에 필요한 성적등급은 D-(0.7) 이상으로 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과목 평점평균은 C(2.0)이상으로 하며, 법학대학원의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 및 성적등급,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과목 평점평균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학위수여

제30조(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① 각 대학원의 각 과정에서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별표1] 내지 [별표3]에 따라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 소정 과목 6학점 이상 추가 취득, 졸업작품 제출, 졸업시험 합격, 인턴십 보고서 제출, 국내·외 저명 학술지 발표 등의 방법을 해당 대학원 내규로 정하여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고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에서 복합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각 대학원은 각 대학원 내규에 따라 국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박사학위 등의 표기방법) 학위기의 표기방법은 각 대학원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32조(명예박사학위) ①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단, 사안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33조(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학점의 평점평균이 B-(2.7) 이상인 자
3.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기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 사항

제34조(학위자격 시험) 학위자격 시험은 구술시험, 외국어시험, 전공시험, 공개발표 등의 학위자격 관련 평가를 포괄하며, 학위자격 시험 과목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제35조(통합과정의 석사학위 취득) 통합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자가 박사학위 취득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석사학위 졸업요건을 갖추어 석사학위만을 취득할 수 있다.

제36조(논문심사) ① 학위청구 논문심사는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해당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해당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 중 1인과 해당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된 위원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석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 박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에 별도로 정한다.

제37조(박사학위 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해당 대학원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 하여야 한다.

제38조(박사학위 등 수여의 취소) ① 총장은 석사.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아 학위수여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10년 이하의 학위청구논문 제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39조(학생의 의무) 각 대학원의 학생은 학칙 및 소속 대학원 내규를 비롯한 본교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소속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 및 학위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40조(학생회의 설치) ① 학생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을 함양하고 자유롭고 창조적인 학술활동을 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에 학생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생회의 명칭은 각 대학원별로 정할 수 있으며,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생 자치활동의 육성과 발전을 돕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④ 학생회 자치활동의 지원을 위해 학생회의 업무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대학원은 소속, 이름, 학번, 기수, 전화번호, 이메일의 학생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회는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이후 즉시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41조(징계)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이 학칙 및 각 대학원 내규를 비롯한 본교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견책·근신(근로봉사)·유기정학·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징계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대학원장이 제청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견책.근신(근로봉사).유기정학 처분은 해당 대학원장이 행하고 무기정학.제적처분은 총장이 행한다.

제42조(장학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발라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7장 공개강좌.위탁학생.연구생 및 외국인 학생

제43조(공개강좌) ① 총장은 각 대학원장의 요청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기간.수강정원.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개강좌를 개설할 때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대학원장이 공고한다.

제44조(연구생) ① 각 대학원의 석.박사학위과정에서 연구 또는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각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 및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장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45조(공동운영 약정 및 운영) 각 대학원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외국대학과 약정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6조(용어의 정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이라 함은 본교 각 대학원이 외국대학의 석.박사학위과정을 외국대학과의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7조(운영방법) ① 교육과정 공동운영 방법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체결한 해당 외국대학과의 약정에 따르되,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학생 평가 등 수업 운영에 있어 해당 외국대학의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교육과정을 운영코자 할 때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고, 해당 교육과정의 4분의 1 이상을 본교 전임교원이 외국대학에서 직접 수업하도록 해야 한다.

제48조(명칭사용) 교육과정 공동운영에는 본교와 외국대학의 명칭을 차례로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9조(학위수여)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는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공동 명의 또는 본교 단독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제9장 대학원위원회 및 직제

제50조(대학원위원회의 구성) ①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③ 각 대학원에는 학사운영위원회를 두어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④ 각 대학원의 학사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대학원 내규에서 정한다.

제51조(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학칙 및 각 대학원의 제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제1항 중 제1호, 제3호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52조(학과장) 각 대학원은 각 학과 또는 전공마다 1인의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제53조(학위지도교수) ① 학위지도교수는 각 대학원 또는 유관 학부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은 외부 인사를 학위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학위지도교수는 대학원생의 논문지도, 논문대체 활동을 지도하는 교수로서 학생의 학술·연구 활동과 학위청구논문 작성, 학위취득을 위한 활동을 지도한다.

제10장 보칙

제54조(준용규정) 학기·수업일수·휴업일 등에 관한 사항 및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희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55조(시행세칙의 제정)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6조(학칙 개정절차) 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장과 충분한 협의 후 학칙개정의 필요성, 개정내용, 시행예정일 및 개정에 따른 효과 등을 문서로 정리하여 일반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일반대학원장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수합·정리하여 검토한 후, 개정안을 마련하여 기획조정처장에게 심의를 의뢰한다.
③ 기획조정처장은 의뢰된 학칙개정안에 대해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일반대학원장에게 송부한다.
④ 일반대학원장은 기획조정처장이 심의한 안을 대학원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은 후,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본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행정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평화복지대학원학칙, 경희대

학교언론정보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산업정보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체육과학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국제법무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아태국제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동서의학 대학원학칙은 폐지된다.
제3조(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본 학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해당 대학원학칙을 적용한다.
제4조(동서의학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대학원에서 동서의학대학원으로 1999학년도 2학기에 편입된 학생에 한해 일반대학원에서 기 취득한 학점 전부를 동서의학대학원의 졸업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일반대학원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본 학칙 시행 이전의 평화복지대학원학칙을 적용받은 수료자의 경우에는 당해 학칙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학년도 2학기까지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 경과조치는 1999년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논문의 대필,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였던 자는 제외한다.
② 본 학칙의 학과는 2000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0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학생 중 희망자에 한하여 구 학칙의 학과를 적용 받을 수 있다.
③ 본 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재학생이 본 학칙상의 학과로 적용 받기를 원할 경우 평화복지대학원장이 기 이수과목의 내용과 수강능력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동서의학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본 개정학칙 제21조내지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학년도 이전에 동서의학대학원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한 학생에 대하여는 구학칙을 적용한다.
③ (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0학년도 1학기에 인류복지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타 학과로 전과를 희망할 경우 학칙 제12조에 의거 평화복지대학원장이 기 이수과목의 내용과 수강능력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본 학칙 제14조 제3항, 제21조 내지 제22조는 2002학년도 2학기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NGO대학원에 관한 경과 조치) 본 학칙의 전공 및 학위명은 2002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본 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재학생이 본 학칙상의 학위명을 수여 받기를 원할 경우 NGO대학원장은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의 경우 2001학년도 2학기에 입학한 학생에 한하여 본 학칙상의 전공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NGO대학원장은 기 이수과목과 수강능력 등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④ (일반대학원 무역학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별표1의 무역학과의 전공분야별 학위명칭은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한방재료가공학과에 대한 경과조치) 2003학년도 1학기까지는 농학과로 학생을 선발하며 2003학년도 2학기부터 한방재료가공학과로 선발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조경전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2002학년도 2학기에 본 대학원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 당시에 일반대학원에서 기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 학칙에 의해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4학년도 1학기 이전에 국제 및 공공정책학과, NGO학과,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타 학과로 전과를 희망할 경우 학칙 제12조에 의거 평화복지대학원장이 기 이수과목의 내용과 수강능력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9월2일부터 시행한다.

② (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4학년도 2학기 이전에 입학한자 중 학칙 제24조③항, 제25조②항과 관련하여 구 학칙을 적용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구평화복지대학원 내규 [별표1]의 이수학점 규정을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보통신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대학원은 폐지하되 재적생이 있는한 존치하는 것으로 본다

③ (건축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된 학칙상의 대학원 명칭은 학칙개정일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조정 내용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아태국제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의 입학정원은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평화복지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1. 본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05학년도 1학기부터 2006학년도 1학기까지 구 학칙에 의해 선발되어 입학한 자가 신 학칙을 적용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평화복지대학원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2005학년도에 입학한 자의 경우 구 학칙에 따라 2006학년도 1학기에 개설되는 공통필수과목 중 평화복지대학원이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학칙 제15조(재입학.편입학 및 전과)와 관련하여 BK21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BK21사업 학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현재 재적생이 전원 졸업하는 시기에 폐원 예정이며, 정원은 2008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원으로 전환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정원조정 내용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평화복지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008학년도 9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학위기문안 변경은 2009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폐지는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 일괄 적용한다.
③ (행정대학원 학위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대학원의 학위명 변경은 2009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④ (연계과정 학점의 중복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연계과정의 경우, 2009학년도 이전입학자에 한하여 학부에서 수강한 대학원 과목 이수학점은 최대 9학점까지 학부졸업학점 및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국제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학위의 수여 및 종별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 국제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과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거한 복수학위 수여는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도 일괄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학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중 법학대학원과 관련된 변경, 추가 사항은 2011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1. 학칙 제14조(재입학·편입학 및 전과)와 관련하여 BK21⁺ 사업 학과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BK21⁺ 사업 학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 후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경영컨설팅학과의 폐과에 따라 경영컨설팅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재학중에 경영학과로 전과를 희망 할 경우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3. 본 학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본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계약학과 관련 경과조치) 학칙 제3조 제4항에 규정한 계약학과와 관련된 사항은 본학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 1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2016학년도 1학기 이전에 퍼포밍아트학과 실용음악전공으로 입학한 자가 2018년 3월 1일부로 재적중인 경우, 그 소속을 실용음악학과 실용음악전공으로 일괄 변경한다.
③ (동서의학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동서의학대학원 논문제출자격과 [별표2]의 동서의학대학원 과정, 학과 또는 전공, 학위종별(입학정원은 제외)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대학원 학과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전자·전파공학과의 폐지에 따라 전자·전파공학과로 입학한 자로서 2018년 3월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전자공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③ (국제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학위과정의 수료인정), 제24조(학기당 취득학점), [별표2]의 국제대학원 학과 또는 전공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동서의학대학원 학과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동서의과학과 한의과학전공의 폐지에 따라 동서의과학과 한의과학전공에 입학한 학생은 동서의학과 한의학전공으로 일괄 변경한다.
⑤ (의학전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및 경과조치는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유급 및 복학 등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21년 2월 이후(2021년 2월 포함)에 졸업하는 자는 의과대학 의학과 동학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⑥ (치의학전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 치의학전문대

학원 입학정원 및 경과조치는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유급 및 복학 등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21년 2월 이후(2021년 2월 포함)에 졸업하는 자는 치과대학 치의학과 동학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⑦ (경영대학원 전공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경영학과 경영컨설팅·서비스전공 폐지에 따라 경영학과 경영컨설팅·서비스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 경영컨설팅전공으로 변경한다.
⑧ (교육대학원 전공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2017학년도 1학기 이후 입학한 상업정보교육전공 및 디자인·도예교육전공 재적학생에 대해서도 변경된 전공을 일괄 적용한다.
⑨ (공공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3]의 공공대학원 학위종별은 학칙개정일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 제3항 제1호의 개정사항은 학칙개정일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③ (국제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 제24조, [별표2]의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과 환경·지속가능개발 전공 관련 개정사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2]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종별은 2018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⑤ (평화복지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의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체육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 제2항 체육대학원 휴학기간 개정사항 및 제20조 제3항 체육대학원 수업연한 단축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제33조 체육대학원 외국어시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체육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 제2항 체육대학원 휴학기간 개정사항 및 제20조 제3항 체육대학원 수업연한 단축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제33조 체육대학원 외국어시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③ 제28조(학업평가) 제1항 학업평가기준을 따르는 대학원은 2020학년도 1학기 성적부터 적용되며,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에게도 적용한다.
④ (경영대학원 전공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경영학과 빅데이터경영전공 폐지에 따라 경영학과 빅데이터경영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 경영학과 AI비즈니스전공으로 변경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본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테크노경영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1. 제24조 제2항의 10호는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이 학칙 시행전에 산업정보대학원으로 입학한 자 중 재입학, 수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20학년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현재의 편제로 소속을 변경하며, 입학당시의 학위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졸업 해당학년도의 학위명을 수여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2]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종별은 2020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④ [별표1]의 일반대학원 융합생명의약학과 학과명 개정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동서의학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1. 학칙 제14조(재입학·편입학 및 전과)와 관련하여 BK21 사업 학과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BK21 사업 학과 및 전공
으로 전과 및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 후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본 학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본항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언론정보대학원에 재적중인 자는 2021년 3월 1일 부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언론정보대학원에 입학한 자로서 학적 변동 후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변경된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동서의학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의학영양학과 헬스케어영양학전공 신설 개정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경영대학원 학과 및 전공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콘텐츠비즈니스학과 폐지에 따라 콘텐츠비즈니스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 미디어&커머스 경영학과(소셜미디어 전공, e커머스전공)으로 변경한다. 문화예술경영학과 세부전공 폐지에도 불구하고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기존 소속전공을 유지하며,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문화예술경영학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④(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과 엔터테이너, 크리에이터 전공 신설 개정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국제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학기당 취득학점) ②항 8호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일반대학원 한약학과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한약학과의 폐지에 따라 2022년 3월 한약학과 재적생(재학, 휴학)의 소속을 천연물융합신약개발학과로 변경하며, 한약학과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 천연물융합신약개발학과로 변경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체육대학원 스포츠빅테인먼트 전공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체육대학원 스포츠빅테인먼트 전공(석·박사과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 당시 전공을 유지한다.
③ (수료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3월 1일자 개정학칙 제23조(학위과정의 수료인정) 제6항 및 제33조(논문제출자격)제2호에 관하여 2008.09.01. 이전 입학한 수료생 중 평균평점 B-(2.7)미만인 자가 희망하는 경우 수료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대학원 선수학점 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2022년 9월 1일자 개정학칙 제25조(선수학점) 제1항제1호에 관하여 특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선수학점 이수 의무 폐지 규정은 일반대학원 재적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③ (일반대학원 지리학과 학위종에 대한 경과조치) 지리학과 지리학박사 학위종 변경은 2023학년 이전 입학생도 졸업 이전인 경우 변경 신청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관광대학원 부동산학과 폐과에 대한 경과조치)

1. 관광대학원 부동산학과의 신입생 모집은 2023년 3월 1일 신입생까지는 관광대학원에서 모집한다.
2. 관광대학원 부동산학과 재적생의 학적 이관은 2023년 9월 1일부로 한다.
3. 2023년 9월 1일 이후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경영대학원 부동산학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한다.
4. 2023년 9월 이후 졸업하는 재적생은 경영대학원 내규의 졸업에 필요한 전공기초 과목을 추가 수강하여야 한다.

[별표 1] 일반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학과·학위종별 및 입학정원(서울캠퍼스)
[별표 1] 일반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학과·학위종별 및 입학정원(국제캠퍼스)
[별표 2] 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학과·전공·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별표 3]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학과·전공·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 별표는 규정정보 홈페이지(http://rule.khu.ac.kr)에서 확인 가능

[별표 3]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학과·전공·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특수대학원	과정	학 과		전 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경영대학원	석사	경영학과		전략경영, 국제경영, 경영컨설팅, 코칭사이언스, AI비즈니스, 아시아경영, 브랜드매니지먼트, 스타트업비즈니스, 서비스경영	경영학석사	985명
		세무관리·회계학과			경영학석사	
		미디어& 커머스 경영학과		메타버스비즈니스, e커머스		
		융합경영학과		기술경영, 6차산업융합경영		
		의료경영학과			의료경영학석사	
		문화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학석사	
		EMBA 학과			경영학석사	
		부동산학과			부동산경영학석사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	서울 캠퍼스	교육정책및리더십,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유아교육, 일반사회교육, 역사교육, 국어교육, 영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수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보건교육, 상업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상담심리, 박물관·미술관교육, 영양교육, 교사리더십, 혁신교육	교육학석사	
			국제 캠퍼스	중국어교육, 디자인교육, 체육교육, 교사리더십, 영어교육, 수학교육, 평생교육, 실용음악교육, 유아교육, 상담심리, 혁신교육	교육학석사	
공공대학원	석사	정책학과		공공정책	행정학석사	
		의료관리학과		간호행정, 병원행정	의료행정학석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노인·케어복지	사회복지학석사	
		시민사회·NGO학과		시민사회·NGO	시민사회(NGO)학석사	
		글로벌거버넌스학과		글로벌거버넌스	국제개발학석사	
평화복지 대학원	석사	국제평화·거버넌스학과		국제평화	평화학석사	
				평화안보정책	정치학석사	
		유엔평화학과		유엔평화	평화학석사	
테크노경영 대학원	석사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	경영학석사	
		건설안전경영학과		건설안전경영	공학석사	
		스포츠경영학과		스포츠경영	체육학석사	
		복지경영학과		복지경영	경영학석사	
		디지털융합학과		디지털융합	공학석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석사	저널리즘학과		신문잡지, 방송	언론학석사	
		전략커뮤니케이션학과		광고, 홍보, 스피치토론, 정치커뮤니케이션		
		문화콘텐츠학과		출판저작권, 대중예술, 디지털영상		
		디지털미디어플랫폼학과		디지털미디어플랫폼산업		
법무 대학원	석사	기업법학과		기업법, 자산관리법, 지적재산법	법학석사	
		공공법학과		입법, 공법, 경찰·안전법		
		중국법학과		중국법		
		건설법학과		건설법		
		조세법학과		조세법, 관세법		
관광대학원	석사	호텔경영학과			관광학석사	
		관광학과				
		컨벤션전시경영학과				
		조리외식경영학과				
		와인・소믈리에학과				
		문화관광엔터테인먼트학과				
		글로벌문화관광경영학과				
아트・퓨전 디자인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		실용음악	음악학석사	
		문화예술콘텐츠학과		문화예술콘텐츠	예술학석사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과		엔터테이너, 크리에이터	예술학석사	
간호대학원	석사	간호학과		노인전문간호사전공	간호학석사	
				정신전문간호사전공		
				임상간호전문가전공		
계						985명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시행일 : 2023. 3.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

제2조(전형방법) 입학전형방법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제3조(외국인 전형) 학칙 제1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면접 없이 서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4조(입학전형 지원구비서류 등)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입학전형지원자의 구비서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원서(원서용 사진 포함)
2. 학업(연구)계획서(소정양식)
3. 학위수여(예정)증명서(학위등록번호 기재)
4. 하위 학위과정의 성적증명서(평균평점 및 백분율 성적 기재). 다만, 영어권 이외의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작품포트폴리오 등 학과에서 정하는 자료(예·체능계열에 한함)
6. 기타 각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또는 자료

제5조(협동과정 입학전형 지원 구비서류) 학·연·산 협동과정 입학 지원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외에 관련 협동기관 학·연·산 운영 책임자의 추천서 및 소속기관장명의의 진학동의서(해당자)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학전형위원) 입학전형위원의 구성과 운영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제7조(입학정원배분) 각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며, 교육부 등 정부나 본교의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는 학과나 교수에게는 별도의 정원을 배정할 수 있다.

제3장 수업 및 등록

제8조(타 대학원 과목이수) ① 특수대학원 재학생은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타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재학생은 학위지도교수와 양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상호학점교류를 할 수 있다.
③ 일반대학원 법학과 재학생은 양 대학원 학과장과 양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 이내에서 법무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제9조(선수학점 이수) ① 일반대학원에 비동일계로 입학한 경우 학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규 교과학점 이외에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12학점 이상을 하위 학위과정에서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 특수대학원 졸업생으로서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동일계의 경우 6학점 이상, 비동일계의 경우 12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소정의 학점 인정서에 학위지도교수와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선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④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선수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따로 정한다.
⑤ 선수학점은 수강신청학점, 졸업이수학점 및 평균평점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제10조(타 대학교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본교 대학원 재학생이 본교와 상호 학점 교류 대상인 국내외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소속 대학원의 학위지도교수, 학과장(또는 주임교수),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등록은 소속 대학원에 하여야 한다.

제11조(입학전 이수학점 인정) ① 각 대학원 입학 전에 국내외 타 대학원의 동등 학위과정에서 소속 대학원 교과목에 포함되는 과목을 이수한 학점은 소정양식의 학점 인정서에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신청할 경우 석사학위과정은 6학점, 박사학위과정은 9학점 이내에서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편입학생 학점인정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② 본교의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본교의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여 B학점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초과분에 한하여 제1항의 절차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각 대학원의 연구과정 등 비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취득한 학점의 2/3 이내에서 동일 학위과정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대학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학대학원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⑤국제대학원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12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 및 정정은 정해진 기간 내에 교내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 입력.신청하여야 한다.
② 최종 수강신청 내역은 본인이 교내 전산 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강신청 과목의 정정은 소속 대학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정정 및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성적정정) 성적이 누락되거나 오기 되었을 경우, 담당교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대학원장에게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정할 수 있다.

제14조(수업연한이후 등록) 대학원의 수업연한 이후 등록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연구등록) ①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료생은 학위 취득시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예약입학제 및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3학기 내에 석사과정 수료학점을 이수하

였을 경우 4학기부터 수료생으로서 연구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③ 통합과정의 학생이 6학기 내에 박사과정 수료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 7학기부터 수료생으로서 연구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④ 연구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제4장 학적변동

제16조(휴학)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 대학원 소정양식의 휴학원서에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 대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이하 "군휴학"이라 한다) 및 출산으로 인한 휴학과 일반대학원, 동서의학대학원, 국제대학원과 특수대학원 재학생이 해외파견 또는 전근으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 등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휴학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허가한다. 다만, 등록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휴학은 매학기 소정의 휴학기간에 하여야 한다.
④ 군 입대를 위하여 미리 휴학할 경우에는 우선 일반휴학원을 제출한 후, 입영 14일전까지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 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⑤ 휴학자의 등록금은 휴학일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하여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 및 대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제17조(복학) 복학을 하려는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의 재학생 등록기간 중에 소속 대학원 소정양식의 복학원서에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 대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 휴학이 만료되어 복학하는 경우에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퇴원을 일반대학원은 학위지도교수 및 학과장,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부대학원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재입학) 재입학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 신청은 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등의 사유로 재입학 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재입학할 수 없다.

제5장 학위청구논문 및 학위수여

제20조(학위지도교수)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학위지도교수는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②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 통합 및 박사 과정의 경우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학위지도교수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공동지도교수, 학과간협동과정, 학·연·산 협동과정인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은 예외조치 할 수 있다.

제21조(논문지도학점) 논문지도학점에 관한 사항을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제22조(학위자격 시험) ① 일반대학원에 학위청구논문 제출 또는 논문대체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학위자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일반대학원 학위자격시험은 학과별로 교육과정시행세칙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학위자격시험은 학과에서 정하는 필기 또는 구술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
④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위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제23조(학위자격시험 시기 및 절차) ① 일반대학원 학위자격시험은 학기별로 실시하며 대학원장이 시험실시 2주전까지 일정 등을 발표한다.
② 학위자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학위자격시험 합격기준) 학위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급제(P) 또는 낙제(N)로 평가하고 학위자격 시험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25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제26조(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및 시기)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 제출 승인서(소정양식)
2. 심사용 논문(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은 학기별로 하며, 제출시기는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27조(논문심사의 결정)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학위논문 심사의 합격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2/3이상,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4/5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심사의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학위수여 결정) 각 대학원장은 논문심사(논문대체 심사)와 학위자격시험 결과를 접수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학위표기 및 수여) ① 학위증서, 학적부 및 그 밖에 대학에서 발행하는 학위증명 관련 문서에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표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학술학위를 표기하는 경우 학칙에서 정한 해당 학위명 표기
2. 전문학위를 표기하는 경우 학칙에서 정한 해당 학위명 다음에 괄호를 한 후 전문분야 표기
② 석사 및 박사학위 수여는 별지 서식 제1호 내지 제4호 중 해당되는 학위기를 수여함으로써 행한다.
③ 각 대학원은 소속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지 서식 제5호의 학위기를 수여할 수 있다.

제30조(학위논문 제출)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학위취득예정자는 즉시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학위논문을 책자로 제본하여 본교 중앙도서관장에게 소정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연구윤리) ① 연구 관련자(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학위지도교수,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등)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그 작성과정 등이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학위 취소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연구생

제32조(지원자격 및 전형) ① 연구생의 지원자격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생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③ 연구생의 입학지원 서류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33조(수업연한 및 이수학점) ① 연구생의 수업연한은 6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 연구생의 이수학점은 학기당 석사학위과정 연구생은 9학점 이내, 박사학위과정 연구생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제34조(연구실적증명서 등) ① 석사학위과정 연구생이 9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 연구생이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는 연구실적증명서 또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연구생 제적) 연구생이 자격미달 또는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로 물의를 야기할 경우 소속 대학원장은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학칙시행세칙.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학칙시행세칙.경희대학교행정대학원학칙시행세칙·경희대학교언론정보대학원학칙시행세칙·경희대학교산업정보대학원학칙시행세칙 및 경희대학교국제법무대학원학칙시행세칙은 폐지된다.
③ (경과조치) 부칙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해당 대학원학칙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1호] 석사 학술학위기 서식
[별지 서식 제2호] 박사 학술학위기 서식
[별지 서식 제3호] 석사 전문학위기 서식
[별지 서식 제4호] 박사 전문학위기 서식
[별지 서식 제5호] 영문학위기 서식

※ 별지 서식은 규정정보 홈페이지(http://rule.khu.ac.kr)에서 확인 가능